

월 · 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

현안분석

-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개인소득세 변경 외

정책흐름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 · 규칙 개정(안)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6년 경제운용방향

재정통계

지방재정 I 편

C · O · N · T · E · N · T · S

견두칼럼	2	2006년의 한국경제와 조세 · 재정정책 / 최용선
현안분석	6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 김중면
	22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 정재호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40	중국, 개인소득세 변경 외
정책흐름	52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 · 규칙 개정(안)
	72	8 · 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80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84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89	2006년 경제운용방향
재정통계	114	지방재정 I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20	양극화, 정치선전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외

2006년의 한국경제와 조세·재정정책

최용선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지난 2003년 이후 3~4%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던 우리 경제는 올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극심한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던 가계부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민간소비도 정상화되어 성장의 내용을 견실하게 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물가수준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시중 부동산금의 흡수로 사상 최대치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모습이 이처럼 견실한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의 취약한 근로조건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세계 최저수준이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의 둔화 및 재정부담의 증가 등 많은 어려운 도전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경제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개방화로 인해 직접 자원을 통제하고 배분하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많은 부분에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에서조차 상당 부분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와 재정지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 보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지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증가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 및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 하락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 등 가족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지출 소요는 커지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단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세수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지출 외에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운영 및 그에 부합하는 재정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근로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동안 국방지출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동시에 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지출의 규모나 우선순위는 경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조세·재정정책만으로는 밝은 미래를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세 및 재정 정책 수단이 효과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사회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정책에서 추구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재정이 지속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목표에 많은 재정지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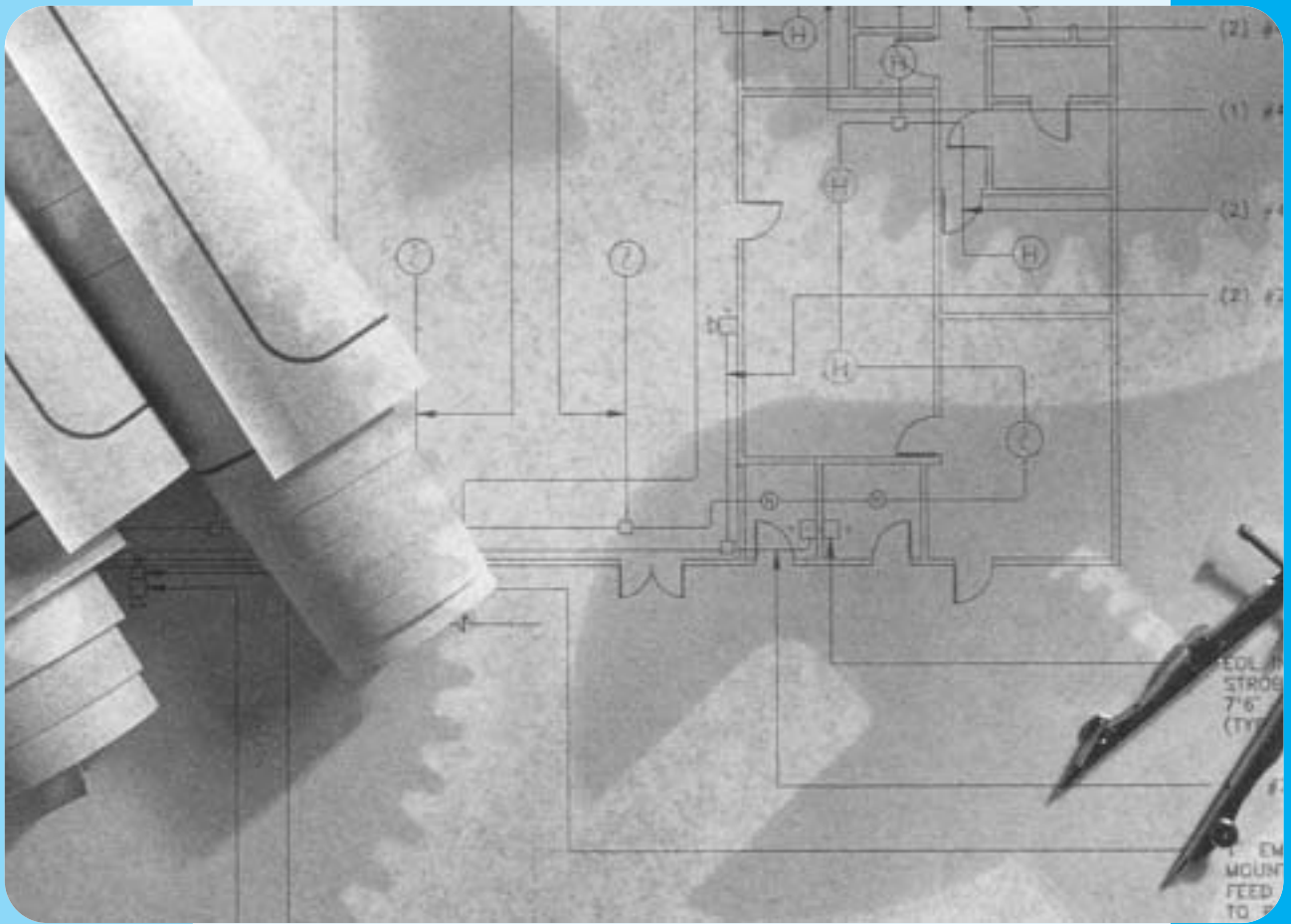
경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도 필수적인 복지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출은 확대되어야 한다. 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처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향후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향후 변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특히 복지지출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향후 복지

제도의 성숙 및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조세 및 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점차 강화될 것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향후 증가되는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문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조세를 통해서도 일정한 소득재분배기능을 할 수 있지만, 조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정자원을 가장 원만하게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 및 조세로 인한 왜곡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조세정책 방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조세·재정정책만으로는 밝은 미래를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육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조세 및 재정정책 수단이 효과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아무쪼록 2006년은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KIP



현안분석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김 종 면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정 재 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김 종 면 연구위원(jhvv@kipf.re.kr)

I. 서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속도가 가속되면서 선진 예산제도의 모습을 거의 갖추어 가고 있다. 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해도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하향식 자원배분 및 부처 자율성 제고, 중기재정 운용, 성과주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예산회계 정보시스템 등은 우리에게 낯설고 우리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도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선진제도들이 도입되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른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물론 아직은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 보다 다듬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제도를 배워서 채택해 간다는 맥락에서 예산제도의 진화과정상 다음 단계의 변화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우리에게 아직은 다소 생소한 다년도 예산제도, 특히 그 중에서도 격년제 예산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을 하고자 한다.

이하 제2절에서는 다년도 예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개괄한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격년제 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로 이러한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 현실에 비추어 다년도 및 격년제 예산제도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년도와 단년도 예산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출승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즉 예산승인을 할 때에 자원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authorization)과 그러한 계획에 의거한 실제 자원지출에 관한 승인(appropriation)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I. 다년도 예산제도의 개념과 현황

다년도 예산제도(multi-annual budget frameworks)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미래의 지출을 감안한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년도 예산제도(annual budgeting)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긴 시평에 근거하여, 즉 다년도 시각에서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다년도와 단년도 예산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출승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에서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즉 예산승인을 할 때에 자원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과 그러한 계획에 의거한 실제 자원지출에 관한 승인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년도 예산제도하에서는 양자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다른 나라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전자는 대개 author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며, 후자는 appropriation, 즉 지출승인이라고 표현한다¹⁾.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여 다년도 예산제도를 정의하면 다년도 지출승인(multi-year appropriations)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에 대한 다년도 계획(multi-year plan), 또는 전망(multi-year forecast)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정·갱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년도 예산제도는 단지 단년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예산의 단위기간을 일년에서 다년도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다년도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정부가 매년 의회로부터 그 다음 회계연도의 지출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1) 미국 예산제도의 예를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및 지출이 수반된 부처활동에 대해 authorization이 필요하다. 이 중 사회보장 등 법정지출(mandatory spending) 등은 authorization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budget authority)을 부여하므로 대개의 경우 별도의 appropriation을 요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appropriation은 주로 authorization이 있는 사업 및 부처활동 중 단년도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Appropriation에 따른 지출과 대비하여 법정지출 등 전자의 경우는 항구입법(permanent law)에 근거한 지출이라고 한다.

Authorization과 appropriation이라는 용어를 미국 예산제도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나, 두 용어 모두 보다 넓은 일반적인 의미가 본래 있으며, 예산 관련 전문문헌에서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혼용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예산 논의에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정도의(광의의) 해석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며, 이는 적어도 지출승인에 관해서는 예산이 단년도 제도로 운영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된 단년도 예산제도란 재원배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지출재원을 배정하는 법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재정운영의 효과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단년도 예산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기재정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년도 예산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처음에는 영국에서 도입·발전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단년도 예산제도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다소 모호한 만큼, 각국별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매년 예산서류에 재정의 총량변수에 대한 단년도 지출전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정부가 의회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멕시코, 스페인, 터키 등 7개국에서 단년도 전망이 예산서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³⁾. 또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이탈리아와 미국⁴⁾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단년도 지출전망이 의회에 단지 예산심의의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년도 지출승인에 비해 구속력이 훨씬 약하다.

지출전망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국가 간에 보다 다양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중기재정 운영을 위하여 총량뿐만 아니라 총지출 한도를 국정의 주요 부문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주요 지출부문을 설정함으로써 ‘재정구조’를 명시화하도록 법에 규정한 국가는 OECD 회원국의 절반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 명시 여부를 막론하고 체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중기재정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재정 기간에 포함된 매 회계연도에 대해 지출의 목표와 한도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시하고 있으며, 다만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중기재정 기간 전체에 대한 수치를 작성하나 기간에 포함된 각 회계연도별로는 전망을 하지 않는다.

중기재정의 기간 역시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약 10개국

2) 물론 국가별로 단년도 예산제도 중 어떤 부분이 법제화되었는가, 또는 의회에 의한 법적 승인이 필요한가 등에 초점을 둘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의회의 동의보다 스스로 정한 준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정부 내의 규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3) 2003년도 기준 OECD의 예산제도 설문 결과에 준함.

4) 미국의 경우에도 총량변수의 단년도 전망을 예산서에 포함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동 전망이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엄밀하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OECD 회원국들의 다년도 예산제도는 단년도 예산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출승인 등 궁극적인 예산의 기능은 단년도 위주 운영을 견지하되, 이 과정에서 체계화된 다년도 시각을 반영하여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서,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정도가 3년 단위의 중기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2년, 호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6개국이 4년,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6개국이 5년 단위의 중기재정 계획을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는 예외로서, 예산서에 전통적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재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부시 정권에 들어 대체로 5년 단위의 전망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중기재정 계획에 제시된 수치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은 세입과 세출의 목표치로서, 단년도 지출승인에서와 같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의 5개국에서는 중기계획의 수치가 각 지출부문에 대한 한도로 작용하여 지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⁵⁾, 그 밖에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9개국에서는 지출과 수입전망은 목표치로 운영되나 재정적자는 한도를 정하여 제약을 두고 있다. 지출 또는 재정적자의 단위는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명목금액을 사용하는 국가가 많으며, 매우 드물게는 실질변수 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OECD 회원국들의 다년도 예산제도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범용적인 요소를 찾아서 취합한 표준모델의 도출이 그리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굳이 공통된 성격을 찾자면, 다년도 예산제도는 단년도 예산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출승인 등 궁극적인 예산의 기능은 단년도 위주 운영을 견지하되, 이 과정에서 체계화된 다년도 시각을 반영하여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서,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년도 예산제도의 형태보다 그 운영 경험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공통된 문제점이 도출된다. 첫째,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채택함으로써 세입전망이 너무 높게 추정되고, 이에 따라 실제 적정수준보다 높은 지출이 계획·실행됨으로써 재정압박을 유발하기 쉽다는 것이 여러 국가의 공통된 경험이다. 둘째,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전망치를 실

5) 스웨덴의 경우 지출총량에 대해서는 3년 후의 회계연도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부문별 지출한도, 즉 부문간 자원배분에 대해서는 이때에 의회에 보고를 하되 의회 승인은 2년 후, 즉 단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해에 받도록 되어 있다. 의회에 최초로 보고되어 승인을 받기까지 2년간은 수상과 재무상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행정부 내부에서 각 부처가 한도를 준수하여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부처의 실질적 지출한도로 작용한다.

질변수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압박의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일선의 지출부처에서 다년도 예산에 적시된 전망치를 암묵적으로 보장된 재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이 경기변동에 따른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부처로부터의 반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여 주로 영연방 계열 국가를 중심으로 중기재정 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수적인 경제성장 전망치를 사용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고안되어 채택되었으며, 민간 연구기관의 경제전망이 발달하면서 이와 대비한 정부 전망치의 객관성을 가늠하기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더 이상 전망치를 실질변수 위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출부처가 소관 예산의 전망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는 예산당국의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기재정과 하향식 재원배분의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III. 격년제 예산제도 소개

1. 격년제 예산제도 개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부터 다소 모호하고 구체적 형태도 다양한 다년도 예산제도 중 가장 진화된 형태로 격년제 예산제도(biennial budgeting)가 있다. 이는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아니라 대체성이 강한 제도로서, 예산 편성 및 승인을 2년 주기의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본절에서는 격년제 예산의 실제 사례 및 장단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격년제 예산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뿐이며, 본고에서는 주로 영국의 사례를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격년제 시행을 시도했던 미국 국방부의 사례와 중앙정부는 아니나 역시 격년제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의 사례가 있다.

2. 영국의 사례

1961년에 처음으로 다년도 예산제도를 채택한 영국은 1963년의 PES(Public Expenditure Survey, 예산연도+향후 4년 지출전망)로 중기재정 운영을 본격화하였다. 그

영국의 격년제 예산은 구체적으로 부처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의 형태로 운영된다. DEL은 격년제 SR하에서 부처별로 설정되는 3년 단위의 구체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지출한도를 의미하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이 구분되어 설정된다. AME는 고정비 성격의 지출로서 DEL보다 엄격한 연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역시 경상과 자본지출로 구분된다.

그러나 PES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결여된 계획서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S는 효과적인 중기재정의 사례로 알려질 만큼 정착되었다. 그러나 PES는 지출전망이 실질변수 위주로 작성되어 물가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지출억제 효과가 반감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응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1980년의 MTFS(Medium-term Financial Strategy, 통화 및 재정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기재정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1998년의 재정안정법에 따라 PES를 대체한 CSR(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이후 연도에서는 Spending Review(SR))를 통하여 처음으로 격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0, 2002, 2004년의 SR까지 4차에 걸쳐 중기예산이 편성되었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산의 편성과 의회 승인이 2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격년제 예산이다. 중기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연도에는 정책기조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미 수립된 중기예산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을 할당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조정이 거의 매년 발생하여, 비록 형식상으로는 격년제 예산을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아직은 매년 시행하는 절충형 운영이라는 평가도 있다.

SR은 향후 3년간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서는 이와 연동하여 2년 주기로 보완한다. 1998년 CSR 당시 중기재정 편성기간은 6년(예산연도+이후 5년)이었으나, 2000년 SR부터는 이를 4년(예산연도+이후 3년)으로 줄였으며, 이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격년제 예산은 구체적으로 부처지출한도(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와 연간관리지출(AME; Annual Managed Expenditure)의 형태로 운영된다. DEL은 격년제 SR하에서 부처별로 설정되는 3년 단위의 구체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지출한도를 의미하며,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이 구분되어 설정된다. AME는 고정비 성격의 지출로서 DEL보다 엄격한 연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역시 경상과 자본지출로 구분된다.

DEL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불용예산의 신속적 이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단년도 예산제도하에서 연말에 불용예산을 집중적으로 소진하는 비효율을 지양하고 부처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기적 시각에서의 재원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기한도 내에

서 연도별 이월이 매우 신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월허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부처 단위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위의 조직에까지 이러한 이월이 허용되고 있다.

DEL 제도하에서는 지출한도가 부처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는 중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중기계획의 수립·집행이 가능해진다. 반면 DEL은 매우 엄격히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소관 예산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재원배분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하향식 재원배분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DEL 운영의 예외적인 요소로는 준비금(reserve) 및 일부 유보 DEL 등이 있다. 예비비라고도 할 수 있는 준비금은 부처별로 할당되지 않고 예산당국이 중앙에서 관장하며, 운영이 매우 엄격하여 부처에서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인 지출요인이라 판단되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규모도 상당히 작다. 준비금 이외에도 각 DEL 안에서 특정 재원은 예산당국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는바, 자본현대화기금(Capital Modernisation Fund) 등이 이러한 유보재원에 속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어야만 예산당국으로부터 재원의 사용이 허가된다. 일반적인 DEL 운영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는 DEL의 기한이 보다 길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2002년의 SR에서는 보건부문은 5년, 운수부문은 10년 기한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부문의 사업이 통상적인 3년보다도 긴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DEL과 대조적으로 AME는 주로 지출규모가 크면서도 변동성이 높고, 부처나 예산당국의 의지만으로 주로 결정되기보다는 수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법정 지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AME 중 가장 큰 항목은 사회보장지출 및 동 지출과 연관된 주택보조금(HRAS; Housing Revenue Account Subsidy)이다. 이외에도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지출이 포함되며, Working Families Tax Credit 등 부(負)의 소득세 형태로 운영되는 공공지출, 지방정부 자체재원으로부터의 지출, 복권재원 지출 등 역시 AME에 포함된다.

AME는 DEL과 별도로 운영되나, 양자를 합한 TME(Total Managed Expenditure; 총관리지출) 한도의 제약을 받으므로, AME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DEL이 축소 조정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ME 설정시 AME margin이라는 일정 수준의 예비적 성격의 재원을 추정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년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부처 운영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군수 조달에 있어서는 다년도 계획과 예산집행을 할 경우, 사업에 따라서는 최대 50%의 비용절감도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3. 미국 국방부 및 지방정부의 사례

가. 미국 국방부의 사례

미국 의회는 1987 회계연도 국방사업계획승인법(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87)에서 1988 및 1989 양 회계연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2년제 예산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국방부 장관에게는 격년제 예산 시행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격년제 예산의 필요성으로 거론된 요인을 보면, 국방예산 편성의 과정과 내용에서 낭비적인 반복성이 높다는 점과 국방예산 지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레이건 정부는 1987년에 2년제 국방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 행정부 간의 정쟁으로 인하여 결국은 의회가 동 예산안의 일부만 승인하고 지출승인 역시 차기 단일 회계연도인 1988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다른 부문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단년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시의 2년제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몇 개의 보고서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중기 재원확보에 따른 부처 사업의 안정성 제고에서는 결국 다년도 재원배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2년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직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부처 운영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군수 조달에 있어서는 다년도 계획과 예산집행을 할 경우, 사업에 따라서는 최대 50%의 비용절감도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나. 미국 지방정부의 사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격년제 예산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으나, 주정부의 경우에는 의외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주에서 시행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격년제 예산보다는 단

년도 예산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1940년 당시 44개 주에서 격년제 예산을 운영하였으나, 2004년말 현재 21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00년대 중반 이후 주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1940년 당시만 해도 4개 주에서만 정기 의회가 매년 소집되었으나, 현재는 44개 주의 의회가 매년 소집된다. 의회가 매년 소집되고 예산의 규모와 구조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예산을 매년 심의·의결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또한 주정부 수입 중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소득세와 부가세⁶⁾의 비중이 커진 것 역시 예산을 매년 심의해야 될 필요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대한 예외도 있었던바, 코네티컷주는 1991년에 단년도에서 격년도 예산으로 복귀하였으며, 애리조나주는 1990~199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격년제 예산으로 이행하였다가 2002년에 규모가 큰 주정부 부처에 한하여 단년도 예산으로 다시 돌아갔다. 캔사스주도 이와 유사하게 작은 부처에 대해서는 격년제 예산을 도입하였다. 그 밖에 일부 주에서도 단년도와 격년제 예산제도 사이를 오간 경험⁷⁾이 있다.

현재는 격년제 예산을 시행하는 21개 주 중에서 오리건,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3개 주에서만 진정한 격년제 예산제도, 즉 기한이 2년 단위로 규정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의 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연속된 2개 회계연도에 대한 2개의 단년도 예산을 동시에 심의·승인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5개 주는 정기 의회가 매년 소집되므로 격년제 예산이라도 매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 격년제 예산의 장단점

주정부 단위에서 격년제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예산의 경우와 유사한 장점들이 거론되나, 지금까지 시도된 몇 번의 종합분석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첫째, 격년제 예산이 주정부의 중장기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보다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단년제에서 격년제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주의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한 1972년의 주정부연합회 보고서와 Texas A&M 대학의 1984년 보고서, 1987년의 GAO 보고서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코네티컷주의 2003년도 보고서에서만 1991년의 격년제 예산 도입 이후 장기재정 전망과

6) 법정지출과 유사하게, 세입은 속성상 정부가 제도를 정하고 전망은 할 수 있어도, 최종규모는 정부의 의지보다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첫 연도에는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편성 중간 연도에도 주정부와 의회에서 주요 신규사업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분석의 질이 제고되었다고 언급된다.

둘째, 격년제 예산하에서는 프로그램 평가와 성과 위주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는 주장이 있다. 코네티컷주에서 1991년에 격년제 예산을 도입할 때 이것이 주요한 이유였으며, 예산주기를 2년으로 늘림으로써 첫 연도에는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편성 중간 연도에도 주정부와 의회에서 주요 신규사업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오리건주나 오하이오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평가 결과가 있으며, 특히 오리건주의 경우에는 의회 소집도 격년제로 이루어짐으로써 중간 연도에 예산편성 작업으로부터 실제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매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할 경우 예산편성에 따른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 자체만으로는 격년제를 채택할 충분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넷째, 격년제 예산은 예산편성에 개입된 전망기간이 단년도에 비해 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측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경제여건의 가변성이 크고, 이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라면 격년제 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매년 수시로 추경 예산편성 등 조정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상의 미국 주정부의 경험을 요약하자면, 단년도나 격년제 예산제도 채택 여부는 결국 예산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 그리고 경제여건 등 외부의 불확실성 요인(특히 세입)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미국 의회의 격년제 예산제도 논의

지방정부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연방예산에서는 격년제 예산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7년에 의회에 격년제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법안이 제출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격년제 예산제도 도입안이 차차 상정되었으며, 특히 하원의 예산과정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the Budget Process)에서 1982~84년에 집중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다. 본절에

서는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논의된 격년제 예산제도의 장단점과 도입의 현실성 여부 등을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미국 연방예산에서 격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의회의 예산수립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의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는 심의·편성과정에서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과정의 일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중복성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과정을 2년으로 연장한 격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격년제 예산제도는 현 예산과정의 문제점인 예산편성의 반복성과 의사결정의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더불어 의회의 다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신축성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격년제 제도의 특성: 확장형과 분할형 모델의 비교〉

	확장형(stretch) 모델	분할형(split-sessions) 모델
개 요	예산과정 전반을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연장	2년 중 첫 해는 예산심의 및 편성, 다음 해는 사업의 심층평가나 기타 예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
장 점	예산 관련 활동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시간적 여유 확보	비예산연도에는 예산 이외의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예산편성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최소화
문제점	단순히 시간의 연장만으로 예산과정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음 - 일정지연의 근본원인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책방향이나 우선순위가 상이하고, 예산과정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임 - 본 모델에서는 한 번의 결정에 걸려 있는 이해득실의 규모가 크므로 오히려 원활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비예산연도에는 경제상황이나 기타 외부여건의 변화로 추경예산 편성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① 불확실성의 증대 - 예산주기가 2년으로 연장되면 경제전망 및 이에 따른 세수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 따라서, 미국 주정부에서도 격년제를 시행하던 주정부 중 다수가 단년도 제도로 변경하여 경제 및 세수 여건에 대응하고 있음 ②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 변화 - 협력관계 저해 : 예산주기가 2년이 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접촉빈도가 낮아지므로 양측의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음 - 의회의 영향력 감쇠 : 지출승인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시점이 의회가 행정부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임. 따라서 의회는 2년에 한 번 지출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	

미국 연방예산에서 격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의회의 예산수립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의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과정을 2년으로 연장한 격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제안되는 격년제 예산제도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확장형(stretch) 모델이고 하나는 분할형(split-sessions, 즉 분할회기) 모델이다. 확장형 모델은 예산과정 전반을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이에 비해 분할형 모델에서는 2년 중 첫해를 예산 심의·편성에 할애하고, 그 다음 해에는 사업의 심층 평가나 기타 예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확장형 모델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분할형 모델에서는 '비예산연도'에는 예산 관련 활동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의회에 격년제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수 차례에 걸쳐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확장형이나 분할형 모델 모두 각기 주장하는 장점들이 결국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분할형 모델에서는 비예산회기에 예산 이외의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예산편성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경제상황이나 기타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비예산회기중에도 예산 변경, 즉 추정 예산편성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의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분할형 격년제 예산이 도입될 경우에는 최소한 비예산회기에 예산을 다루는 것을 의회가 스스로 금지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의회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성격의 제약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확장형 모델은 예산과정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정이 보다 정확히 준수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과연 이러한 취지대로 예산과정의 일정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일정이 지연되는 원인의 본질은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단순히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경우 의회와 행정부 간에 정책방향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2년에 한 번 재원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의 결정에 걸려 있는 득실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보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원활한 합의와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

성이 높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확장형과 분할형을 막론하고 격년제 예산제도에 관한 미국 의회의 논의에서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두 가지 사항이 더 있다. 첫째는 예산주기가 2년으로 길어짐에 따라 그만큼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전망 및 이에 따른 세수전망은 단년도 예산 운영시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반면 전망기법 등 기술적 오류에 기인한 예측오차 등은 단년제보다는 격년제에서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서 오는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는 앞서 검토한 미국 주정부의 사례가 자주 인용된다. 즉 1940년에 격년제 예산을 사용하던 44개 주에서 다수가 단년도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지금은 21개 주가 격년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격년제 예산을 시행하는 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연방예산에 격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는 데에는, 지금도 격년제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실상 매년 예산편성을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지방정부에서 경제 및 세수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예산연도에도 주의회가 추경예산 편성 등 예산 관련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격년제 예산제도의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접촉빈도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의회가 평가와 집행 감독을 강화한다면 행정부의 고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사업 및 예산집행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조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격년제 하에서는 지출승인의 빈도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도 의회가 행정부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예산안, 즉 지출승인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시점이다. 행정부처나 기관의 사업 및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일부 부처나 기관과 의회 간의 신뢰가 손상될 경우 의회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미국 의회가 근본적으로 스스로 목표와 행동양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격년제 예산제도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만일 격년제 예산을 시행하여 기대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의회는 그 반대로 경제 및 예산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대해 이전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지출과정에 대해 통제력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의회가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격년제 예산 도입을 통하여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중복성을 줄일 수 있

미국 의회가 근본적으로 스스로 목표와 행동양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격년제 예산제도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만일 격년제 예산을 시행하여 기대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의회는 그 반대로 경제 및 예산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대해 이전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으며, 보다 많은 시간을 정책수립과 발전적 감독 기능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고 집행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증대됨으로 인하여 격년제 예산제도에 있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혹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라고 해도, 격년제 예산제도를 통하여 중요한 예산 의사결정이 보다 원활하게 예산과정의 일정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 의회에서의 중론이다.

IV. 요약 및 시사점

중앙정부 단위에서 격년제 예산은 영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다년도 예산제도의 가장 진화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주정부 등 하위 단위의 정부의 사례는 아직 경제 규모와 발달단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서 시행되는 형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격년제 예산은 사례가 이와 같이 취약하여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시사점이나 적용 가능성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향식 자원배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도입된 다년도 예산제도(국가재정운용계획)를 앞으로 정착·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추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전면적으로 격년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이는 영국과 같은 중앙정부의 사례나 미국의 주정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국의 AME에서 볼 수 있듯이 격년제를 시행하는 영국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지출은 매년 심의·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주정부 사례에서도 경제와 재정이 크고 복잡해질수록 매년 수시로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의 경우 경제여건 등 외부요인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추경예산도 사실상 매년 편성되고 있는 현황임을 감안할 때, 격년제 예산제도에 필요한 지출의 안정성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보장지출

등은 DEL이 아니라 AME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바, 향후 사회분야 예산 증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격년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본격적인 적용은 어렵더라도 지출의 가변성이 비교적 낮고 반복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격년제 또는 그보다 긴 주기의 예산편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향식 재원배분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현재 매년 설정되는 지출한도 설정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로 선별적으로 다년도 지출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격년제를 포함하여 다년도 예산제도 등 외국의 예산제도 사례를 참조할 때에는 정부의 형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고에서 살펴본 다년도 제도나, 그와 사실상 거의 개념이 같은 중기재정, 최근 우리가 도입한 하향식(top-down) 예산제도 등 모두가 제도 운영의 핵심은 다년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일단 설정된 한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준수하는 구속력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면서 사실상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다년도 지출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량 및 부문별 지출수준을 다년도 기준으로 설정하고,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다년도 지출한도 체제를 이미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재정당국의 관심은 이러한 다년도 지출한도의 구속력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특히 지출한도의 구속력을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에 근거하여 보장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의원내각제를 따르기 때문에 법 또는 제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출한도의 준수나 변경절차를 설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 및 그 이하 내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어느 이상의 정책방향의 괴리가 있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 관련 안건은 대개 큰 무리 없이 내각의 결정이 의회에서 수용되며, 주요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대부분 내각 불신임에 해당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으며, 법이나 공식화된 제도보다는 행정부, 즉 내각에서의 내부적인 통제 및 기(既)결정 준칙의 준수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이와 대조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의회 통제의 실효성이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향식 예산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지출한도의 구속력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다년도 한도의 공표 또는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웨덴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소한 다년도 총량 한도라도 법적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KIP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의회 통제의 실효성이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향식 예산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지출한도의 구속력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다년도 한도의 공포 또는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재훈 외, 『주요 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한국행정연구원, 2004.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예산편성 방식』, 정책분석 04-07, 2004.
- 한국조세연구원, 『OECD/WB 예산 집행 및 절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정책분석 04-03, 2004.
- CBO, “Biennial Budgeting,” 1988.
- GAO, *Biennial Budgeting: Three States’ Experiences*, report to the chairman, Committee on Rules, House of Representatives, GAO-01-132, 2000.
- OECD, “Budget Reform in OECD Member Countries: Common Trends,” PUMA/SBO(2002)9, 2002.
- OECD, “Budgeting for the Future,” OCDE/GD(97)178, 1997.
- Snell, Ronald K., “Annual and Biennial Budgeting: The Experience of State Government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04.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Biennial Budgeting,” testimony by Barrett B. Anderson before the Subcommittee on Legislation and Budget Process, Committee on Rules, 2005.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Biennial Budgeting,” Hearing of the Subcommittee on Legislative and Budget Process, Committee on Rules, 2001.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Biennial Budgeting: A Tool for Improving Government Fiscal Management and Oversight,” Hearings of the Committee on Rules, 2000.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정재호 연구위원(jcheung@kipf.re.kr)

I. 서론

부가가치세는 소비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담세자가 되는 대중적인 세(稅)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비교적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 그동안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2004년 기준 부가가치세수는 약 35조원으로 우리나라 총국세 수입의 약 29.3%, 내국세 수입의 약 36.3%, 간접세 수입의 약 80.3%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세목으로는 최고의 세수비중을 차지하면서 나라살림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부가가치세제를 바탕으로 영업세 등 8개 세목¹⁾을 흡수 통합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은 전면개정 없이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만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한 지 거의 30여년에 이르면서 현재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의 참고자료로서 본고는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Consumption Tax Trends*라는 OECD 보고서를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업세, 유흥음식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의 8개 세목

OECD 회원국들의 부가세 세율은 5%에서 25%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200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유럽 국가들의 부가세 비율은 15~25%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유럽 이외의 비 유럽국가들은 이보다 낮은 5~15%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II.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

현재 OECD 회원국은 모두 30개국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다²⁾. OECD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2004년에 EU에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OECD 30개 회원국 중 19개 국가가 EU 회원국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³⁾. EU 국가들은 현재 EU의 제6차 VAT Directive(EU's 6th VAT Directive)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적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본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세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면세대상품목 등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 세율

OECD 회원국들의 부가세 세율은 5%에서 25%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로는 헝가리, 덴마크, 스웨덴으로 25%의 표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도입 초기(1989년) 표준세율이 3%로 가장 낮았고, 그 후 1998년 5%로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를 유지하고 있다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현재 OECD 국가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부가세율이 15~25% 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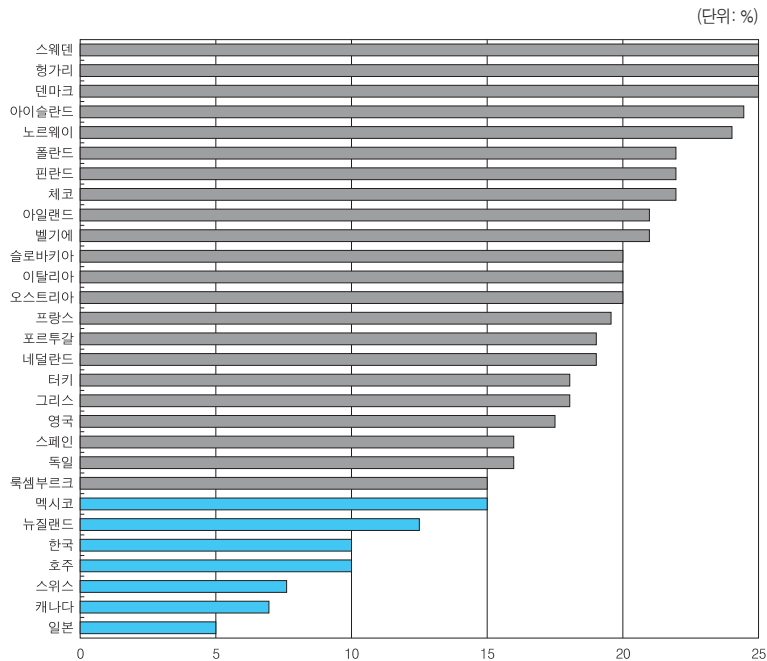
2) 미국은 역사적 입헌적인 이유로 최종재에 대해 sal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3) 이들 국가들이 각각 OECD에 가입한 시기는 체코 1995년, 폴란드와 헝가리 1996년, 슬로바키아 2000년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기본세율은 13%였지만, 실시 초기부터 탄력세율 하한인 10%의 시행세율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시행세율은 10%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입 초기 부가가치세법상의 기본세율은 13%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세율이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탄력세율제도는 198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유럽 이외의 비유럽국가들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은 5~15% 사이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즉, 유럽국가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구간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유럽국가들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세율은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일본(5%), 캐나다(7%, 일부지역 15%)와 스위스(7.6%)가 있고,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1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림 1] 부가가치세율(2003년)



자료: OECD(2004)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2. 차등세율 부과

OECD 국가들의 표준세율 변화를 보면, 1994년 단순평균 표준세율이 17.1%에서 2003년에는 17.8%로 약간 증가하였다. 1994년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가 부가세율을 1%p 인상하였고, 그 밖에 일본(2%p), 네덜란드(1.5%p), 포르투갈(3%p), 터키(3%p)가 부가세율을 인상하였다. 즉,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들의 표준세율에는 큰 변화가 없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특징으로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다수)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유럽국가들은 모두 단일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있다. 1980년대의 유럽국가들의 부가세율 변화를 보아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의 경우에도 1983년 부가세율이 14%였는데 10년 후인 1993년에 15%로 인상되었고, 그 후 1998년에 다시 16%로 인상되는 등 급격한 세율변화는 없었다.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특징으로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다수)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유럽국가들은 모두 단일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⁵⁾.

유럽국가들은 초기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당시 표준세율 이외에 표준세율보다 낮은 경감세율과 표준세율보다 높은 고세율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많았다⁶⁾. 표준세율보다 높은 고세율은 사치세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아일랜드는 최고 40%까지 부과하였다. 그러나 EU 통합과 함께 1992년 이후부터는 모두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은 폐지하였고 경감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부가세 도입 초기부터 표준세율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부가세 세율 제도를 운영한 것과 달리 비유럽 국가들은 처음부터 단일세율 구조로 부가세 제도를 시작하였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두 지역간에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한편, 고세율 폐지는 표준세율 인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⁷⁾. 다만,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이미 1979년에 12.5%인 고세율을 폐지하였다. 이 때 영국은 표준세율을 8%에서 15%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고세율 폐지로 표준세율을 올렸다고보다는 소득세 부담을 낮추면서 부가세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음식, 서적, 신문, 문화서비스, 의약, 장애인용품 등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일부 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각국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OECD 국가들에 비해 면세 범위가 넓다.

5) 덴마크도 1975년에는 일시적으로 9.25%의 경감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다.

6) 표준세율보다 높은 고세율을 부과하던 국가들로는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등이다.

7) 벨기에는 표준세율을 0.5%p 인상하였고, 포르투갈은 1%p 인상하였다.

〈표 1〉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표 준 세 율					경감세율	영 세 율
	1994	1996	1998	2000	2003		
호 주	-	-	-	10.0	10.0	-	-
오스트리아	20.0	20.0	20.0	20.0	20.0	10.0/12.0	-
벨 기 에	20.5	21.0	21.0	21.0	21.0	6.0/12.0	0.0
캐 나 다	7.0	7.0	7.0	7.0	7.0	-	0.0
체 코	-	22.0	22.0	22.0	22.0	5.0	-
덴 마 크	25.0	25.0	25.0	25.0	25.0	-	0.0
핀 란 드	22.0	22.0	22.0	22.0	22.0	8.0/17.0	0.0
프 랑 스	18.6	20.6	20.6	20.6	19.6	2.0/5.5	-
독 일	15.0	15.0	16.0	16.0	16.0	7.0	-
그 리 스	18.0	18.0	18.0	18.0	18.0	4.0/8.0	-
헝 가 리	-	-	25.0	25.0	25.0	12.0	0.0
아이슬란드	24.5	24.5	24.5	24.5	24.5	14.0	0.0
아 일 랜 드	21.0	21.0	21.0	21.0	21.0	4.3/13.5	0.0
이 탈 리 아	19.0	19.0	20.0	20.0	20.0	4.0/10.0	0.0
일 본	3.0	3.0	5.0	5.0	5.0	-	-
한 국	-	-	10.0	10.0	10.0	-	0.0
룩셈부르크	15.0	15.0	15.0	15.0	15.0	3.0/6.0/12.0	-
멕시코	10.0	15.0	15.0	15.0	15.0	-	0.0
네덜란드	17.5	17.5	17.5	17.5	19.0	6.0	-
뉴질랜드	12.5	12.5	12.5	12.5	12.5	-	0.0
노르웨이	22.0	23.0	23.0	23.0	24.0	12.0	0.0
폴란드	-	-	22.0	22.0	22.0	7.0	0.0
포르투갈	16.0	17.0	17.0	17.0	19.0	5.0/12.0	-
슬로바키아	-	-	23.0	23.0	20.0	14.0	-
스페인	16.0	16.0	16.0	16.0	16.0	4.0/7.0	-
스웨덴	25.0	25.0	25.0	25.0	25.0	6.0/12.0	0.0
스위스	6.5	6.5	6.5	7.5	7.6	2.4/3.6	0.0
터키	15.0	15.0	15.0	17.0	18.0	1.0/8.0	-
영국	17.5	17.5	17.5	17.5	17.5	5.0	0.0
단순 평균	17.1	17.2	17.7	17.7	17.8	-	-

주: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은 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기도 함.
 자료: OECD(2004)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표 2〉 OECD 국가의 영세율, 경감세율 품목비교

(Z: 영세율, L: 경감세율)

	음 식	서 적	신 문	의 약	수 송	장애인	문화서비스 ¹⁾
호주	Z					Z(차량)	
오스트리아	L	L	L				L
벨기에	L		Z	L		L ²⁾	
캐나다	Z			Z			
체코	L	L		L	L	L(기구)	L
덴마크			L				
핀란드	L	L	Z	L			
프랑스		L		L		L(기구)	L(박물관)
독일	L	L		L	L	L(기구)	L
그리스	L	L		L	L	L(기구)	L(공연)
헝가리	L	L ⁵⁾	L	Z(사람용)	L	L(기구)	L
아이슬란드	L	L	L		Z(국제)		
아일랜드	Z	Z	L	Z ³⁾			L
이탈리아	L	L	L	L(장애인)		L(기구 등)	L
룩셈부르크	L	L	L	L	L(여객)	L	L
멕시코	Z ⁴⁾			Z(특허)			
네덜란드	L	L	L	L	L	L	L
노르웨이	L	Z	Z		Z(휠리)		
폴란드		Z			L(여객)		
포르투갈	L				L(여객)	L(기기)	L
슬로박	L	L	L	L	L	L(장비)	L
스페인		L	L	L	L	L	L
스웨덴	L	L ⁶⁾	L	Z(조제)	L(여객)		L
스위스	L	L	L	L			
터키		L	L				L
영국	Z			Z(조제)	Z(여객)	Z	

주: 1) 문화서비스는 영화, 박물관등을 포함함.

2) 장애인 차량은 영세율, 장애인 기구, 사설요양소

3) 구강용 의약, 일부 의료장비

4) 가공음식, 훈제연어, 캐비어 제외

5) 교육용의 경우 영세율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영세율

자료: OECD(2004)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3. 세수 비중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GDP 혹은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OECD 국가들의 재정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1980~90년대에는 그리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1995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2년 기준으로 4.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절대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의 부가세수 GDP 비중이 7.6%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간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럽국가들의 GDP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나라와 유럽국가들의 부가세율 차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1990년 이후 비유럽국가들과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중간 정도로 일본(2.5%), 멕시코(3.5%), 호주(4.3%)에 비해 높고, 캐나다(5.2%), 뉴질랜드(8.8%)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⁸⁾.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GDP 비중이 더 큰 반면,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은 높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그 이유는 캐나다의 경우 GDP에서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면세범위 등이 좁아 그만큼 과세기반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멕시코는 그와 반대의 경우로 추측된다.

총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00년을 전환점으로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2002년에는 18.9%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18.7%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총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EU 국가 평균을 상회하다가 최근에는 이보다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소득·이윤·자본이득과세, 재산과세⁹⁾의 비중이 증

8) 참고로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부가세율이 10%로 동일하며,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15%와 12.5%로 우리나라보다 높고,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5%와 7%로 우리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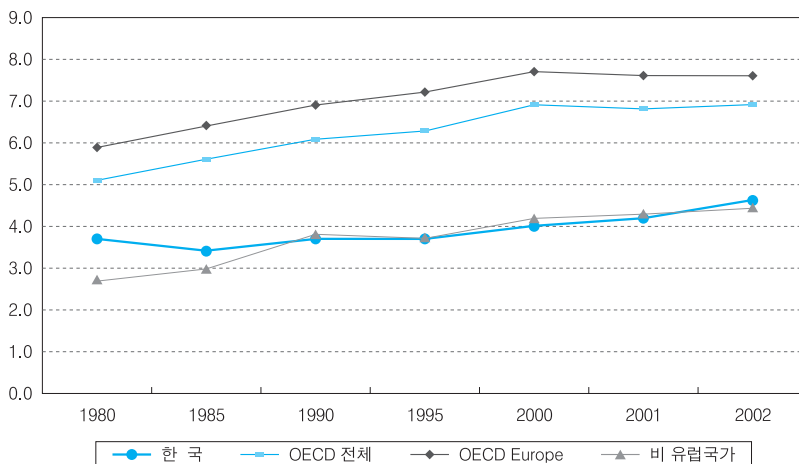
9) 소득·이윤·자본이득과세는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code 1000)를, 재산과세는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 Taxes on property(code 4000)를 의미한다. 그러나 Taxes on property에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재산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의미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산세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명칭은 서술의 편의상 사용하였다.

총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전환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2002년에는 18.9%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인 18.7%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가하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보장 기여금¹⁰⁾의 급격한 증가로 부가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비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 국가의 평균이 15.7%로 비유럽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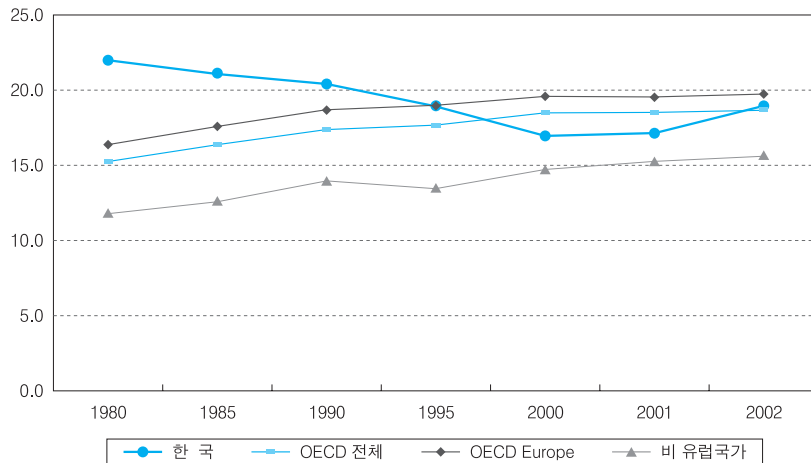
[그림 2] GDP 대비 부가세(General Sales Taxes) 세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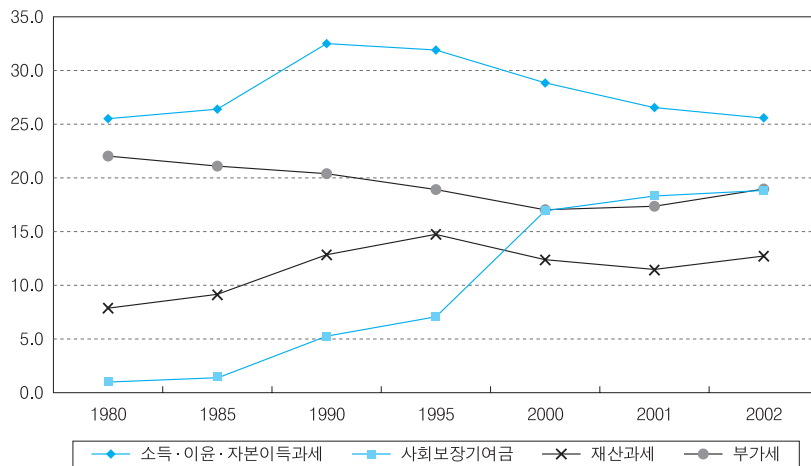
주: [그림 2]와 [그림 3]의 비중은 General sales taxes에 대한 비중이다. General sales taxes에는 부가가치세, sales taxes, 기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비중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

10)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code 2000)를 의미한다.

[그림 3] 총세수입 대비 부가세(General Sales Taxes) 세수입 비중



[그림 4] 우리나라의 총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추이



주: 재산과세는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 Taxes on property(code 4000)를 의미한다. 그러나 Taxes on property에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재산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의미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산세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명칭은 서술의 편의상 사용하였다.

국가별로 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이 매우 다양하여 최고 약 25만달러부터 최저 약 3천달러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어 국가별 정책적 목적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

OECD 국가들 중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면제하여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다. 저세율, 영세율, 혹은 면세 적용은 개별 재화 혹은 용역에 기준하여 결정되는 반면, 사업자 등록면제는 사업자 규모 혹은 특정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 제도 역시 다른 형태로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9개국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별로 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은 다양하다. 등록 면제 기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3천만엔(약 25만달러)이고, 그 다음으로 체코(약 10만달러), 영국(약 9만달러), 프랑스(약 8만달러) 등으로 2만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가 10개국이다. 2만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도 10개국으로 가장 낮은 국가로는 폴란드(약 2,605달러)와 아이슬란드(약 2,724달러)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별로 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이 매우 다양하여 최고 약 25만달러부터 최저 약 3천달러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어 국가별 정책적 목적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적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기장 등의 측면에서 납세협력의무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켜주고자 간이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간이과세 범위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즉,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1,200만원은 약 1만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면제수준의 높고 낮음을 직접 비교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표 3〉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현황(2003. 2기)

(단위: 명, %)

합 계	일반과세자		간 이 과 세 자					
			소 계		납부대상자		납부면제자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3,635,511	1,861,707	51.2	1,773,804	48.8	243,434	6.7	1,530,370	42.1

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전체 납부세액의 약 0.3% 정도로 미미하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년.

〈표 4〉 국가별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의 면제 기준

		자국화폐	美 달러	선택적 등록	최소 등록기간
호 주	AUD	50,000	28,075	○	1년
오스트리아	EUR	22,000	23,102	○	5년
벨기에	EUR	-	-	-	없음
캐나다	CAD	30,000	19,082	○	1년
체 코	CZK	3,000,000	99,960	○	1년
덴마크	DKK	50,000	7,071	○	없음
핀란드	EUR	8,500	8,926	○	없음
프랑스	EUR	76,300	80,123	○	없음
독 일	EUR	16,620	17,453	○	5년
그리스	EUR	9,000	9,451	○	5년
헝가리	HUF	2,000,000	8,918	○	2년
아이슬란드	ISK	220,000	2,724	○	2년
아일랜드	EUR	51,000	53,555	○	없음
이탈리아	EUR	-	-	-	없음
일 본	JPY	30,000,000	252,660	○	2년
한 국	KRW	-	-	-	없음
룩셈부르크	EUR	10,000	10,501	○	5년
멕시코	MXN	-	-	-	없음
네덜란드	EUR	-	-	-	없음
뉴질랜드	NZD	40,000	20,963	○	없음
노르웨이	NOK	30,000	4,332	×	2년
폴란드	EUR	10,000	2,605	○	취소불가
포르투갈	EUR	-	-	-	5년
슬로바키아	SKK	3,000,000	75,990	○	1년
스페인	EUR	-	-	-	없음
스웨덴	SEK	-	-	-	없음
스위스	CHF	75,000	54,317	○	없음
터 키	TRL	-	-	-	없음
영 국	GBP	55,000	88,627	○	없음

주: 국가별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사업별,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자료: OECD(2004)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OECD의 표준면세 범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교육, 스포츠, 문화서비스, 전통적으로 공공사업인 우편서비스, 자선과 관련된 자선활동, 비영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 일부 기금모금 행사, 역사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과세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분에서 과세하는 보험, 부동산 임대, 토지 및 건물 공급, 금융서비스, 복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 과세·면세업종

모든 OECD 국가들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OECD에서는 표준면세(standard exemption)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OECD의 표준면세 범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교육, 스포츠, 문화서비스, 전통적으로 공공사업인 우편서비스, 자선과 관련된 자선활동, 비영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 일부 기금모금 행사, 역사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과세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분에서 과세하는 보험, 부동산 임대, 토지 및 건물 공급, 금융서비스, 복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는 표준면세를 주축으로 면세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표준면세범위를 고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표준면세 중에서 임대(개인주택)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연극과 영화에 대해, 노르웨이는 우편서비스에 대해 표준면세와 달리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이와 반대로 벨기에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포르투갈은 농업에 대해, 슬로바키아는 공영 TV와 라디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면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표준면세를 주축으로 면세범위를 결정하고 있다¹¹⁾.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에 의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 중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첫째, 표준면세 중에서 과세되는 업종으로 우편서비스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가 눈에 띈다. 복권 및 도박, 교육, 문화서비스 등에 과세하기도 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저세율을 적용하는 신문과 서적에 대해서 터키에서는 과세하고 있다. 둘째, 표준면세 외에 면세되는 업종으로는 여객수송, 장의(葬儀), 공공기관의 용수공급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표준면세범위 이외의 분야에는 거의 면세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면세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로 과세를 하고 있어 면세범위를 아주 좁게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의료서비스, 교육, 보험(생명보험 제외), 부동산

11) 회원국별 자세한 사항은 <부표> 참고.

산 임대(주거용 제외)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고, 자선활동, 일부 기금모금행사, 스포츠, 문화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정기초식료품과 음료, 물, 교통 등에 대해 면세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우편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종교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 복권(마권 포함) 및 도박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뉴질랜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5〉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 및 EU Directive 비교

구 분	면 세 대 상
OECD 표준면세 (standard exemption)	우편서비스, 환자수송, 병원 및 의료, 혈액·근육·장기, 치과의료, 자선활동, 교육, 비영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서비스(라디오 및 TV방송 제외),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서비스, 마권·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 공급, 일부 기금모금 행사 등
표준면세 이외의 우리나라의 면세 부문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공중전화, 담배(200원 미만), 국내 제작이 곤란한 스포츠 경기 관련 수입품 및 철도용 물품, 면세제,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학교의 급식, 농·어업용 유류, 농·어업의 경영 및 작업대행용역, 미식용 농림축수산 물, 인적용역,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등
EU 제6차 Directive 제13조 면세대상 기준	- 공익활동 : 우편사업, 공적인 단체가 행하는 병원·의료조치, 의료업무, 인체기관·혈액·모유·의치 공급, 치과기사 업무, 공적 단체의 청소년보호, 교육·직업훈련, 문화서비스,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 등, 사회부조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종교단체 등이 행하는 인력공급 등, 면세단체 등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의 보증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 비영리단체가 행하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 등, 일정한 비과세단체의 기금활동 관련 서비스 등, 환자 운송서비스, 공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활동 - 기타의 활동 :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의 임대(호텔, 주차장 등 제외), 면세행위를 위해 이용된 재화 등의 공급, 신용거래·수표 등의 유통수단에 관한 양도 등, 우표·인지 등의 공급, 도박·복권 기타의 도박(gamble),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급, 건축용지 이외의 나대지의 공급, 회원국 정부가 면세로 추인한 특수 분야, 도박과 같은 징세기술상의 이유에 의한 것

현재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는 29개 OECD 국가 중 부가세율 수준, 경감세율 적용여부, 부가세 수입이 GDP 혹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서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간의 뚜렷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 면세범위에서는 두 지역간의 특별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III. 결 론

현재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29개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 중 19개 국가가 EU회원국으로 OECD 회원국의 ⅔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를 비교하다 보면, 유럽국가들의 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세율 수준, 경감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수입이 GDP 혹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서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간의 뚜렷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 면세범위에서는 두 지역간의 특별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우선,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낮은 편에 속한다. 그 이유는 유럽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이 15~25%로 높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비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비유럽국가들의 세율은 5~15% 구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유럽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낮지만, 비유럽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기준으로 이용해 우리나라 세율수준을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부가세 수입이 GDP 혹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럽국가들이 비유럽국가들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 부가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비유럽국가들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고, 이에 비해 유럽국가들의 GDP 대비 비중은 더 높다. 이런 차이는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간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럽국가들의 부가세율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비유럽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멕시코(15%)는 GDP 대비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반면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캐나다(7%)는 GDP 대비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세율수준도 영향을 주지만 면세적용 범위 등 과세기반의 차이가 부가세 수입 규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세 수입이 우리나라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유럽국가들보다 높고 유럽국가들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 수입이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나라의 다른 세목과 비교할 때 유럽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결과

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OECD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지만 그 역할은 OECD 유럽국가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부가가치세 체제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표준세율 이외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유럽국가들은 모두 단일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유럽국가들은 부가세 도입 초기부터 표준세율보다 낮은 혹은 높은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EU 통합을 계기로 지금의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유럽국가들은 처음부터 단일세율 구조로 시작하여 현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서로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유럽에서 단일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도 한 때는 경감세율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폐지한 사례도 있다. 단일세율과 복수세율 구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보다는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과 면세범위에서는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간의 특별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사업자 등록 면제는 개별국가별로 모두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부가세 면세범위와 관련해서 OECD에서는 표준면세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 룩셈부르크는 이 표준면세범위에 한정해서, 그리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 일부 예외 품목에 과·면세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는 표준면세범위보다도 좁게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EU의 제6차 Directives 그리고 OECD 표준범위와 비교해 볼 때 넓은 편이다. OECD에서 표준면세범위를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OECD 표준면세범위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세를 면세해 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면세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해 면세범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부가세 면세범위가 넓을수록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범위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 면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우선 일부 분야에서 면세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된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유사한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해 과세와 면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면세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된 분야로는, 예를 들어, OECD 표준면세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는 교육,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비영리교육과 국민후생용역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중 중계수수료, 대여금고 운영, 환전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리교육에도 면세가 적용되고 의료서비스와 금

OECD 국가들은 비영리교육과 국민후생용역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중 중계수수료, 대여금고 운영, 환전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리교육에도 면세가 적용되고 의료서비스와 금융서비스도 그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음서비스도 그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달리 가공과 미가공을 기준으로 식료품을 구분하여 미가공식료품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식품(food)¹²⁾에 대해 경감세율 혹은 일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해 가공과 미가공의 잣대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미가공’이란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유사한 식료품에 대해서도 과·면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면세범위 및 기준 조정은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다. **KIPF**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년.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3*, 2005.

12) 이들 국가들이 사용하는 식품(food)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공식료품도 포함되어 있다.

〈부표〉 부가가치세 표준면세대상 업종 중 과·면세업종의 국제비교(2003년)

	표준면세 ¹⁾ 외 면세업종	표준면세 중 과세업종
호 주	특정 기초식품과 음료, 의료, 보육, 종교서비스, 일정 조건하의 사업매매(supplies of going concerns), 물, 하수처리시설 및 배수로, 교통 및 교통 관련업 공급자, 귀금속, 국제우편, 정부의 자산보유 및 이와 유사한 이권 허가, 장애인 이용차량	국내우편 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종교를 제외한 문화 서비스,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 및 재보험, 도박(복권과 마권포함), 토지공급(농장토지 공급제외) 상업용 및 신규거주 부동산
오스트리아	—	임대(개인주택)
벨기에	법률서비스	—
캐나다	보육, 법률지원, 내륙수로 수송, 도로 및 교량 통행료, 시정서비스	복권 및 도박, 상업용 토지 및 건물의 공급 및 임대, 국내우편서비스
체 코	공연방송 및 라디오, supplies of enterprises	문화서비스
덴마크	여객수송, 장의업	연극 및 영화
핀란드	공연서비스, 문학 및 예술 저작권, 시각장애인에게 의한 거래 중 일부, 공동요지 서비스, 자가 채취한 자연산 베리(self-picked natural berries)	우편서비스, 문화서비스, 상업용 빌딩임대(선택적)
프랑스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기관이 추진하는 전쟁희생자 추모의 공동요지·무덤·기념비의 유지 개선 보수 건축, 신 산업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물품, 규정한(regulated) 시장에서 이루어진 상품선물거래, 자원 컨소시엄(resource consortia)에서 VAT 면세 또는 VAT에 제한받지 않는 개인(법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부동산 임대(영리 사용을 위한 토지 및 부동산 임대 에 대해 전체과세(full taxation)), 환자 수송시 비자격 자 그리고/또는 이 목적으로 설비되지 않는 차량으로 된 경우
독 일	—	—
그리스	법률서비스, 저작권, 예술가 서비스, 공공 TV·라디오, 공공기관의 용수공급	문화(조건적으로 극장 공연 영화 연주회 등의 입장료 : 저세율)
헝가리	공연방송, 대중스포츠, 중개 서비스, 교육용 건물의 임대, 스포츠 및 문화, 소유권 및 채권이전, 의무적 사회장보보험, 공공행정	safe transaction, 치과치료, 의료보험 무분위 아닌 경우의 환자수송, 토지 및 건물이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25% 과세,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와 건물 공급에 과세
아이슬란드	스포츠, 여객수송, 저술업, 작곡업, 장의업, 여행업	—
아일랜드	여객수송, 방송, 공공기관에 의한 용수 공급, 스포츠 관람, 장의업 및 여행사, 육아	상업용 부동산의 장기임대, 토지 및 건물 공급
이탈리아	시내여객수송, 장의업	상업용 토지 및 건물의 공급 및 임대(표준세율), 건축 회사에서 임대하는 거주용 주택 저세율 과세(10%)
일 본	사회복지서비스, 일부 장애인용 장비 판매, 공공서비스, 사회보험(securities)	의료보험, 교육, 보험 및 재보험, 금융서비스, 토지공급

〈부표〉의 계속

	표준면세 ¹⁾ 의 면세업종	표준면세 중 과세업종
한 국	공공교통, 용수와 석탄공급, 농업과 어업용으로 쓰이는 석유, 장의업	상업용 빌딩의 임대와 공급, 상업문화서비스, 허가된 클럽의 도박
룩셈부르크	—	—
멕시코	잡지판매, 금화·은화 및 주식, 저작권, 내륙여객수송, 농림어업	생명보험 및 농업보험을 제외한 보험 및 우편서비스, 상업용 건물의 임대와 개인대부 및 소비자 신용을 위한 금융서비스(주택임대만 면세)
네덜란드	장의, 화장, 공연방송, 스포츠클럽, 작곡, 작가, 언론인의 활동(service)	문화 서비스(거의 모두 낮은 세율), 부동산 임대(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요청한 경우), 부동산 공급(구매자와 공급자 모두 요청한 경우), 스포츠 시설의 사용(sports accommodation)
뉴질랜드	귀금속(금·은·백금)	우편서비스, 혈액, 근육, 장기, 환자 및 부상자 수송, 치과치료, 자선활동, 일부 기금모금 행사, 교육, 비영리조직의 비상업적 활동(조건 없는 기부 제외), 문화서비스, 스포츠, 보험 재보험(생명보험 및 재보험 제외), 부동산 임대(주거용 제외), 마권, 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 공급(5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 제외)
노르웨이	여객수송, 장의, 방송, 호텔숙박	우편 서비스
폴란드	농업서비스, 택시서비스, R&D서비스, 장의업, 화장 및 장묘, 공연방송, 공공 TV·라디오, 일부 수의(veterinary) 서비스	은행을 제외한 전당업,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포르투갈	농업	—
슬로박	공영 TV와 라디오	—
스페인	문학 및 예술에 대한 저작권	소비가자가 지불하는 문화서비스 중 일부
스웨덴	공영 TV 및 라디오, 출판, 저작권, 공공장묘 서비스, 사회서비스	우편 서비스, 대부분의 문화서비스, 상업빌딩 임대(선택적)
스위스	일정조건하의 유아 및 아동보육,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 일정 조건하의 대리인 지급, 중고품 중 일부	단시간 주차, 은행서비스 중 일부, 보철·의치, 야외행사시 야외 및 개인용 임대
터 키	해상수선 및 인도, 영업 목적의 항공·철도운송, 사회서비스, 농업용수	교육 문화 서비스, 신문, 서적, 잡지(저세율), 우편서비스, 상업용 건물 매매, 임대, 라디오 및 TV방송, 병원, 복권 및 도박
영 국	장의 및 화장, 스포츠, 고급 의료서비스	게임기 및 허가업소의 도박, 신규 상업건물 소유권(free hold) 판매는 완료일부터 3년간 표준세율 과세함. 더하여, 일반적으로 VAT 면세되는 상업빌딩의 기타 공급은 선택적 과세임

주: 1) 표준면세대상 업종: 우편서비스, 환자수송, 병원 및 의료, 혈액, 근육, 장기, 치과치료, 자선활동, 교육, 비영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 마권, 복권 및 도박, 토지 및 건물 공급, 기금모금 행사 등임.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중국, 개인소득세 변경

- 최근 국무원은 개정된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를 발표, 중국의 개인소득세가 2006년 1월부터 새롭게 실시될 예정
- 이 법규는 개인소득세 개혁에 맞춰, 개인소득세 징수와 관련해 일부 수정
 - 신규법령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연소득 12만원인 이상인 납세자는 앞으로 개인소득세 징수 증점관리 대상에 포함돼 직장에서 매월 개인소득세를 대신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 외에도, 연말 또는 연초에 세무기관에 세금을 신고해야 함
 - 또한 신규법령에 따르면 겸직을 통해 얻는 수입도 신고해야 함
- 일부 기업에서는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현물과 유가증권을 관용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신규법령에서는 재차 납세자가 취득한 현물소득과 유가증권은 납세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직장에서 나눠준 현물, 예를 들어 주택, 컴

퓨터, 자동차, 월병, 음료 등은 임금, 급여로 분리되며, 이 역시 각각의 가격을 근거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이 밖에도, 개인이 직장에서 마련한 무료여행에 참가하거나 주식청약 등의 유가증권을 구매할 시에 그 고용주가 할인이나 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면, 이 역시 임금, 급여에 따라 납세액을 책정함

〈KOTRA, 경제무역정보 12/31〉

중국, 빈부격차 해소하려 농업세 완전 폐지

- 제10기 19차 회의를 열고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회의가 끝나는 29일 농업세 폐지를 공표할 예정
-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세가 폐지
- 농업세 폐지 결정은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임
- 중국의 가구당 평균수입은 1997년 도시 지역이 5,160위안(약 67만원)으로 2,090위안(약 27만원)인 농촌의 2.4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3년 도시 8,472위안(약 110만원), 농촌 2,622위안(약 34만원)으로 소득격차는 3.23배로 커졌으며 최근에는 5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세워진 1949년부터 2000년까지 52년간 거둬들인 농업세를 식량으로 환산하면 7,000여억kg에 이르러 농민 1인당 평균부담액이 연간 13~28kg인 셈이라 보도
- 전인대 재정위원회의 류지빈(劉積斌) 부주임위원은 “도·농 소득격차 문제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며 “농업세 조정은 국가 농업정책 및 소득분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
- 중국은 2004년부터 농민보조 차원에서 전면적인 농업세 감면 정책을 시행해 지난해에만 500억위안을 감면, 징수된 농업세는 232억위안에 그침
-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은 빈부격차가 수입보다 보유재산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상위 20% 계층의 재산은 최하위 20% 계층의 60배에 이르며, 이들은 중국 전 금융자산의 67.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세계일보 12/25〉

러시아, 연내 WTO 가입 사실상 무산

◆ 러-미 양자협상 결렬에 따라 러시아 WTO 가입 무산돼

- 홍콩 각료회의의 결과
 - 지난 17일,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보좌관인 알라 보리센코바(Alla Borisenkova)는 인터팍스(Interfax)를 통해 금년 내 러시아의 WTO 가입이 무산됐다고 발표
 - WTO 가입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WTO 개별 회원국들과 양자협상이 우선 타결돼야 하는데 현재 러시아는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체결부분에서 답보 중인 상태여서 WTO 가입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음
 -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러시아는 양자협상에서 의견

불일치를 보였던 국가들과의 일괄 협상타결을 노렸으나, 일부 국가와는 여전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연내 가입 무산

- WTO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이 최대 관건
 -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미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임
 - 양측은 여객기, 지적재산권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호 합의점에 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불일치
 - 미국측은 ‘미국계 은행과 보험회사의 러시아 내 지사 설립 승인’을 요구했고, 러시아측은 ‘금융시장 개방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임
- 러시아의 WTO 가입 전망
 - 게르만 그레프 장관이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전체 회원국들과의 양자협상 타결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러시아의 WTO 가입은 여전히 불확실할 수밖에 없음
 - 특히 금융시장 개방문제는 단순 경제논리를 적용시킬 수 없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WTO 가입시기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임

〈KOTRA, 경제무역정보 12/23〉

EU 회원국 부가세 현황 및 문제점

- EU 회원국 ‘부가세 편차’가 기업경쟁력 약화 -
- EU 단일 ‘부가세율’ 주장하는 목소리 커져 -

- 재화,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간 부

가세(VAT)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회원국간,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Ernst & Young’ 브뤼셀 지사는 ‘EU-25 부가세 현황과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부가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며, 내수위축은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높은 부가세 때문에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가세의 문제점 및 불균형 해소를 촉구
- EU 회원국들은 각국마다 당면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높은 부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무산되고 그나마 자국내에 있던 기업들도 역외로 빠져나가는 실정
- 프랑스는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등으로 인해서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내년부터 현행 16%인 부가세율을 19%로 올릴 예정
- 세계적으로 부가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서 싱가포르와 일본이 5%인 반면, 북유럽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25%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독일, 벨기에, 프랑스가 부가세율이 높은 국가들임
- 최근 프랑스는 식수와 소프트 음료에 대해 일반부가세(19.6%)를 대체해 최저부가세(5.5%) 부과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동일품목에 21%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벨기에의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해당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혼란을 겪었음
- 이런 이유에서 EU의 ‘단일부가세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회원국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조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단위: %)

회 원 국	일반부가세율	최저부가세율
독일	16	7
오스트리아	20	10
벨기에	21	6
덴마크	25	-
스페인	16	7
핀란드	22	8
프랑스	19.6	5.5
그리스	19	9
아일랜드	21	13.5
이탈리아	20	10
룩셈부르크	15	6
네덜란드	19	6
포르투갈	21	5
영국	17.5	5
스웨덴	25	6
키프로스	15	5
에스토니아	18	5
헝가리	25	5
레토니아	18	5
리투아니아	18	5
몰타	18	5
폴란드	22	7
슬로바키아	19	-
체코	19	5
슬로베니아	20	8.5

자료: EU 집행위

- 부가세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회원국마다 부가세 신고 및 징수절차가 상이하고 복잡해 많은 기업들이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큰 형편이고, 특히 벨기에는 부가세 신고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신고누락분에 대해서 최고 20%까지 과태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만이 매우 큰 실정

〈KOTRA, 경제무역정보 12/17〉

캐나다도 감세 논쟁…전문가들 “효과없다”

- 1일 보수당의 하퍼 당수는 연방소비세인 GST(Goods and Services Tax) 세율인하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
 - 보수당 안은 현행 7%인 소비세를 2006년에 6%로 인하하고 이어 향후 5년 내에 다시 5%로 인하하겠다는 것임
 - 캐나다 국민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주정부에 내는 세금인 PST(Provincial Sales Tax)와 함께 연방소비세인 GST 등 두 가지의 소비세를 지불해야 함
 - 보수당은 세율인하로 45억달러의 세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년에 6만달러를 버는 4인 가족의 경우 400달러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전문가들은 GST를 1% 인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4달러짜리 햄버거를 구입할 경우 4센트, 100달러짜리 상품을 구입할 경우 1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개인들의 일상적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오히려 GST 1% 인하로 연방정부 세수에 45억달러의 부족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 하퍼 당수는 이에 대해 자유당 정부가 지난 8년간 630억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적어도 550억달러 또는 그 이상의 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GST 1% 인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
- 여론조사 전문가 및 정치분석가들은 선거전략만을 놓고 볼 때 보수당의 GST 인하 공약이 자유당의 감세정책에 비해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자유당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 정

책은 보다 점진적이고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소비세인 GST의 경우 감세폭 여하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일상적 소비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감성에 훨씬 호소력이 클 것이라고 지적

-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저축률이 낮은 나라에서 소비세 인하는 소비심리를 부추길 뿐 정작 필요한 캐나다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
- 소득세, 법인세를 손대는 것보다는 소비세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이 이미 입증된 마당에 보수당이 선거논리를 앞세워 GST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

□ 캐나다 권위지인 글로브앤메일은 2일자 “보수당이 GST를 인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수당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

-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비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핀란드(14%), 영국(11.2%), 프랑스(10.8%) 등으로 높은 반면 캐나다는 8.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공약으로 연방정부 재원부족에 따른 피해는 결국 중산층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

〈국정브리핑 12/6〉

재정 정책

미국, 하반기부터 경기 다소 둔화

- 2006년 미국 경기는 전체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고 유가, 쌍둥이 적자, 주택버블 등과 연관된 악재들이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 펀더멘털도 2005년 에 비해선 다소 약화될 것이라 관측
- 미국 경제가 2007년에 본격적인 조정국면을 거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2006년엔 건실한 회복세를 보인 2005년과 2007년 사이의 중간적 흐름을 나타낼 것이란 관측이 대세를 이룸
- 미국 경제는 2006년에도 3.5% 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엔 국제통화기금 등 연구 기관들이 이 같은 성장전망을 소폭 더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이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고 있고 가계와 기업의 지출수요가 여전히 활발하기 때 문임
- 경제전망기관인 ‘행동경제학’ 그룹은 “미국 성장의 3 분의 2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지출은 2006년에도 강세 를 보일 것”이라며 기업수익성이나 주택경기 등도 2005년보다는 소폭 약세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활기 를 잃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
- 주택 경기는 특히 2006년 미국 경기를 전망할 때 대단 히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저 금리를 토대로 주택 경기가 미국 전역에서 활기를 띠었 지만 2005년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소 수그러들 기미를 보였기 때문임

-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수요가 급감하면서 주택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고 경고
- 그러나 일반가구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에 미국의 주택수요가 갑자기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며 2006년에도 횡보세 혹은 최소한 점진적 하강세를 나 타낼 것이란 전망
- 상반기까지 강한 반등을 보이다 하반기 들어 다소 수그 러드는 모습으로 경기가 진행될 경우 미국의 쌍둥이 적 자는 그 부담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
-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미국의 국내수요가 다소 수그러들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효과 가 있음
- 전망기관들은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확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
- 재정적자도 2006년엔 그 속도가 더 줄거나 개선될 조 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관측

〈매일경제 12/30〉

위웅딩 소장 “中, 외부충격 없다면 올해 9% 성장 무난”

인터뷰 /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연구소 위웅딩 소장

- 위웅딩(余永定)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장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석유 위기 등 외부적인 큰 충격만 없다면 9%대 안정적인 성 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
- 미국 경제에 대해 그는 “단기간에 미국 달러화 환율이 급변하거나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달러화 가 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 관측
- 그는 미국 정책당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부동산 거품 해소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구사하는지 국제 경제계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올해부터 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다. 11차 5개년 계획 청사진에서 특징은 무엇인가.

▶ 중국 지도부가 마련한 11차 5개년 계획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 틀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과거 발전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기 위한 것이다. 경제와 사회발전을 좀 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중국은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경제성장 패턴도 바꾸어야 하고 자주혁신 능력도 증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생산공장 기능만을 수행했으나 앞으로 중국 자주기술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빨랐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물론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한 4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 공공투자를 늘렸다.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 동력은 수출증가였다. 그러나 올해 중국 경제는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동력이 다소 미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교역국인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면 수출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11차 5개년 청사진 중 첫 해인 올해 지방정부 투자 총동이 재연되느냐다. 빠른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있는 지방정부가 투자를 늘리면 중앙정부는 반드시 조기에 이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 간여가

없다면 2006년 중국 경제성장 속도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나 중동 걸프만 지역 핵문제 등으로 인한 석유위기 발생 등 경제외적인 중대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는 9% 안팎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위안화 절상압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 올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석유위기와 각국간 경제 불균형 악화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6월말 원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유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들어 원유가격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2006년에는 석유에 대한 수요 압력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석유는 생산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석유가격 불안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특히 걸프만과 중동 정치 상황에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구촌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각이 매우 다르다. 일부 미국 경제학자는 세계 경제 불균형 이유로 각국 화폐 환율 불균형을 꼽고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돼 미국 국제수지 불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국제적인 경제 불균형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내 저축과 투자 불균형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저축과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절상한다 해도 경상수지 적자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달러화 가치가 대폭 떨어지면 세계 경제는 상당한 미국발 충격을 받게 된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큰 중국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완전히 회복된 느낌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경제에 대한 전망은

▶ 최근 상황을 보면 일본과 EU 경제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좋은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 경제는 마침내 회생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 소비수요는 이미 일본 경제 회생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가 균형을 회복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EU 경제성장은 독일 경제 회복으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 경제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수출증가에 의존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독일을 비롯한 EU 전체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공헌할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달리 장담하기 어렵다.

-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중국 금융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중국 정부는 은행개혁을 위해 1998년부터 불량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관리공사를 발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으로 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상당히 낮아졌다. 은행 불량채권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은행을 비롯한 중국 금융기관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여전히 중국이 안고 있는 크나큰 숙제다. 중국은행과 건설은행 소유권 변화와 개혁절차를 보면 중국은행 개혁을 엿볼 수 있다. 감독당국은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에 대해 일정한 경영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컨대 불량대출비율(3~5%) 자산충족률(8%) 비용지출(수입 대비 35~45%) 등 구체적인 경영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에서는 국유 상업은행 개혁과정에서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에게 대량 주식을 넘기는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유자산을 너무 헐값에 넘긴다는 지적 등이다.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한국 경험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

- 중국 경제는 수출입 등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 정부도 올해부터 내수시장 육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2004년에 중국 무역총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를 넘어섰다. 과도한 대외무역의존도는 중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대해 갈수록 취약해지는 체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수시장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중국 경제의 과도한 대외의존도는 과거 20년 동안 수출주도형 정책과 외자유치정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 내수를 자극하는 것은 거시경제정책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체제 개혁과 체제개혁 문제라 단번에 성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일부에서는 중국이 2008년 이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 중국 경제성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한 높은 투자율에 따른 것이다. 과거 25년 동안 중국 투자율은 40% 정도를 유지했다.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 가계 저축성향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다. 높은 저축률이 유지되고, 과거보다 자본생산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5년까지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위융딩 소장은 중국내 대표적인 국제금융통으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한국 금융통화위원), 인

민은행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중국 금융정책 관련 핵심 브레인으로 개방적인 면모를 갖추

- 1948년생인 위 소장은 1969년 중국과학원 베이징과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과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이론연구실 주임으로 근무하다 88년에는 국비유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진학해 94년 국제금융 분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98년부터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 1981년 이래 논문 100여편과 저서 10여권을 발표

〈매일경제 1/1〉

일본 디플레 탈출 ‘눈 앞’…금리인상론 힘받을 듯

- 일본이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인 디플레(물가하락) 탈출을 눈 앞에 두고 있음
- 총무성은 11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2000년 100 기준)가 9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했다고 27일 발표
-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은 2003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임
- 이에 따라 2005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말 쯤에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에서 벗어나고 금리인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
- 소비자 물가를 부문별로 보면 슬림형 TV 등 디지털 제품 가격인하 영향으로 교양 및 오락용 내구재가 12.7% 하락했으나 물가하락 주범으로 꼽혀온 고정 전화 통신 요금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가솔린 등유 등 석유관련 제품은 8.5% 오름
- 소비자 물가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1998년 7월부터 하락기조가 정착된 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떨어졌음
- 2003년 10월에 물가가 오른 적이 있으나 이는 의료비

인상과 쌀농사 흉작으로 인한 일시적 요인 때문이었음

-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금융정책 변경을 둘러싼 일본은행과 정부측 논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물가 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0.1% 상승하고 내년에도 0.5% 오를 것으로 전망
-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내년 3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물가 상승기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통화완화정책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 이에 대해 자민당과 경제부처는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회복 및 재정 재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금융완화정책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경제 12/27〉

EU, 2.1% 성장 원만한 회복 독일 경제개혁이 관건

- 25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럽연합(EU) 경제는 새해 원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전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EU의 올해 GDP성장률이 지난해 1.4%보다 0.7%포인트 늘어난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 이 같은 성장률 추이를 볼 때 EU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탈출을 선언한 일본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보임
- EU가 경제성장률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전세계를 뒤흔든 고유가가 올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EU 회원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UBS는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가 저성장의 오명에서 벗어나 올해 기존 전망치 0.9%를 크게 웃도는 1.5%의 확장세를 나타낼 것이라 관측
- 영국은 당초 예상치 2.0%보다 높은 2.5%, 프랑스 역시 당초 제시했던 2.0%보다 높은 2.1%가 될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EU는 다소 낙관적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걸림돌이 만만치 않은 상황
-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큰 폭의 오름세인 실업률을 낮추고 재정적자 규모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 블룸버그뉴스는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향후 경제개혁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 새로 출범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실업률과 재정적자폭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 쇄신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독일이 경제개혁에 성공한다면 비슷한 경제상황에 놓인 프랑스, 이탈리아에도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

〈매일경제 12/30〉

美 퇴직연금의 교훈

- 미국에서는 요즘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재계와 행정부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음
- 재계는 노동비용 상승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퇴직연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퇴직연금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변경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 퇴직연금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기업들이 자신

들의 재정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이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실이 날 경우 회사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선호했음
- 하지만 요즘에는 연금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C)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 지난 85년의 경우 DB형이 퇴직연금시장의 66%를 차지했지만 이후 기업들이 재정부담을 우려해 DC형으로 바꾸거나 신규 기업들이 DC형을 채택하면서 지금은 DC형이 64%를 차지하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부실한 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추가 자금투입에 대한 부담도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실제 지난해의 경우 포천 1,000개 기업 중 71개 대기업이 자금부담을 이유로 전통적인 DB형 연금지급을 아예 중단했고, 휴렛패커드·시어스 등은 신입직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으며 제너럴모터스(GM)·포드·IBM·노스웨스트 등 부실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연금미납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부실한 연금운용이 개별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세금까지 갹아먹고 있는 형국임

- 물론 DC형 퇴직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미국 금융시장의 저변을 튼튼하게 살찌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대목임

□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시대가 열려 월가(街)의 대형 투자기관들은 벌써부터 한국도 DC형 제도를 채택해 자본시장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DC형에 몰리는 자금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결국 퇴직연금에 대한 책임은 개인 근로자들이 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

- 한국 직장인들도 퇴직연금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즉 일종의 회사로 생각하고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펀드운용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함

〈서울경제 12/13〉

日, 계속고용제도 의무화

- 일본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65세까지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최근 개정
 - 이 법은 기업들의 의무 정년을 현재는 62세 정년이 원칙이지만 2007년부터는 63세, 2010년에는 64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하여 2013년에는 65세까지 늘리도록 규정
 - 일본 정부가 이처럼 기업 정년을 확대하는 것은 연금 제정의 건전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후생연금의 지급개시를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추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즉 연금지급의 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계속고용제도'를 갖추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74%에 달함
- 일본의 고령자 취업대책
 - 일본은 3명 이상 중·고령자가 창업을 하면 최고 500만엔의 '취업기회창출조성금'을 창업자금으로 지원
 - 2003년 10월 건립된 고령장애자지원기구는 중·고령자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며 재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교

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력서 쓰는 법,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관련 예산은 후생노동성이 전부 지원

- 전국에 1,820여개가 설치된 '실버인재센터'도 고령자 취업을 돕고 있음. 이 센터는 쉽고 단기적인 지역밀착 업무를 고령자에게 알선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건강하고 취업의욕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회원으로 받고 있음
- 또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을 지급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도 부여

〈매일경제 12/13〉

덴마크 복지시스템 흔들리나

－ 요람에서 무덤까지 덴마크 복지시스템 흔들리나 －

- 덴마크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시스템이 구축
 - 그러나 인구 노령화 및 국제경쟁의 증가 등으로 복지시스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스템이 무너지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
 - 덴마크는 최근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부담 완화, 증가하는 경쟁 속에서 국제경쟁력의 확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 등의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스템의 개편 필요성 제기
- 덴마크의 앤더스 포 라스무센 총리는 2년 전 위원회를 설치해 사회복지시스템 개혁방안을 연구토록 했으며, 지난주 이 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를 통해 43가지의 개혁방안을 정부에 제안
 - 이 보고서는 연금수령 연령 인상, 조기은퇴제도의 점진적 폐지,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의 인하, 교육비와 병원비의 개인부담 제도

도입 등 사실상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흔들리는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

□ OECD, EU 집행위, IMF 등은 물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덴마크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

○ 현재 덴마크의 공식적인 정년은 65세로 돼 있으나 덴마크 노동자 50%가 연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60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는 조기은퇴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노동인구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정부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일을 하지 않고 실업수당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많아 정부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 내지 70세로 올리는 한편 조기은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이민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해 복지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추가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덴마크는 법인세가 28%, 개인소득세가 평균 40~50%에 달해 GDP 대비 조세수입이 49.6%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28%에서 2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도 낮추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 전문가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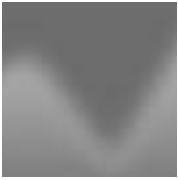
○ 한편 현재 교육비 및 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개인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비와 병원비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

○ 특히 이 위원회는 정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40년 내에 노동인구가 250만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래해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더스 포 라스무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덴마크 국민의 66%가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위원회의 43가지 제안 중 연금수령 연령의 인상, 조기은퇴제도의 점진적 폐지,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세 가지만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내년 봄부터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어 과연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인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흔들릴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KOTRA, 경제무역정보 12/15〉



정책흐름

1.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
2.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4.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5. 2006년 경제운용방향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

※ 이 자료는 2006년 1월 9일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I.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퇴직연금 과세제도 개편

(1)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소득령§ 40의 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연금수령액에서 “본인 불입금액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text{연금수령액} \times [1 - (\text{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div (\text{총연금지급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한 과세방식 ☐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

<개정이유>

- ☐ 연금불입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 연금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

불입단계 수령단계

- | | | |
|-----------|-----|-----|
| • 소득공제분* | 비과세 | 과 세 |
| • 소득공제초과분 | 과 세 | 비과세 |

* 현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근로자 불입분 전액 공제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 연금수령시 과세)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소득령§ 42의 2)

현 행	개 정 안
	☐ 연금불입 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 「가입자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개정이유>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 중도인출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세 부과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나 수령액은 운영성과 등에 따라 차이 발생

**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소득령§ 42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장변경에 따른 퇴직금 등 이전시 과세방법 ☐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A, DC형으로 이전시 : 과세이연 ☐ 퇴직금을 수령시 : 퇴직소득으로 과세 - 단,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환급

〈개정이유〉

☐ 근로자는 퇴직 및 직장이동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으며

* 퇴직일시금(DB, DC, 퇴직금) → DC형, IRA로 이전 가능

☐ 이 경우 최종 수령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05. 12 이전분에도 동일하게 적용)

2.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1)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소득령§ 132③)

현 행	개 정 안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금액 ☐ 10만원 초과분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부과 * 영수증수취명세서 :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내역(공급자,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	☐ 5만원 초과분

〈개정이유〉

☐ 2004년부터 경비 등의 지출시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되었으나

☐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작성대상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2% 부과

☐ 이를 통해 5만~10만원 사이의 지출에 대한 증빙관리가 가능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47⑥)

현 행	개 정 안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미제출 금액의 2%	☐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개정이유〉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업 종	수입금액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 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3)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소득령§ 224)

〈법 개정내용(§ 173)〉

- ◇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자의 과세자료 수집 협조 의무 확대
-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의무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 신설 ○ 특정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 골프장 경기보조, 간병 ○ 사업장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용역

〈개정이유〉

- 납세자의 소득과약을 위하여 소득·고용과 관련된 자료(근무일수, 의뢰건수 등)를 다양하게 수집
- 〈적용시기〉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과세기반 확대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외항·원양어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개정이유〉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제도('74년 도입)는 외화획득 차원에서 국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현재는 해외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 중심의 해외취업형태로 전환된 점 및 국내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면 축소
- 다만,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현행 유지
- 〈적용시기〉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채 원금이자 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령§ 22의 2)

현 행	개 정 안
□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 □ 다만,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채의 원금이자 분리제도(STRIPS: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 채권(zero coupon bond)으로 매매하는 제도

<개정이유>

- 장기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국채원금이자분리제도는 '06년 이후 발행되는 국채부터 적용

- 국채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발행시점의 차이에 따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

4. 납세편의 제고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소득령 § 143, 소득령 제17825호 부칙§ 2)

현 행	개 정 안
□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 범위 한도에서 결정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적용기간 연장 ○ 3년 연장('07년 귀속분까지)

<개정이유>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지원할 필요

* 소득령 부칙§ 2(2002. 12. 30 대통령령 17825호)에서 3년간('02~'04)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소득세 과

세표준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 지정단체 ○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 ○ 노동조합비 ○ 교원단체 납부회비 ○ 공무원직협 납부회비 *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 *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총예산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초과 *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자원조달비율로서 정부지원, 기업협찬 및 자체수입사업 등은 제외 ○ 지정절차 -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 재정부장관이 심사·지정 ○ 사후관리 -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 - 5년마다 재지정

<개정이유>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원

-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 및 감독을 받으나 시민단체의 경우 사회적 감시기능을 담당하므로 감독을 면제하는 대신 결산보고서 공개 등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

- 다만, 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기부금만 제한적으로 인정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 주택가격 평가방법 신설(소득령 § 112⑩)

〈법 개정내용(§52④제3호)〉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하여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로 제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주택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개정이유〉

- ☐ 분양권은 분양가격으로 평가하여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 ☐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 〈적용시기〉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 관련

(1)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 154①)

현 행	개 정 안
☐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 3년 보유, 2년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 다음의 경우 보유 · 거주요건 미적용 - 협의매수 · 수용시 - 국외이주로 양도시	- 협의매수 · 수용시(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분에 한함) -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내 양도시

〈개정이유〉

- ☐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예외규정 적용 배제
- ☐ 국외이주후 오랜 기간(예: 10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 해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현재 이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 공포일까지 국외이주한 경우 시행일부터 2년내 양도시 종전규정 적용

(2)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소득령 § 15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2년내 양도시 비과세(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개정이유〉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공포일 이후 지방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에게 적용

II.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기업구조조정 세제 관련

(1)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법인령 § 80)

현 행	개 정 안
☐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이 피 합병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대상자산 : 토지와 건물	☐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 ☐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개정이유〉

☐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례〉 공포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 이연(법인령 § 82)

현 행	개 정 안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법인이 취득하는 신주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 신주의 가액이 출자전환된 채권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손비로 불인정 ☐ 다만, 정리계획인가기업 등에 출자전환시에는 손비로 인정 * 조특법상 특례('05. 12 종료)	☐ 채권법인이 취득하는 신주의 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평가 *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을 추후 주식처분시점까지 이연

〈개정이유〉

☐ 출자전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지원

〈적용례〉 공포일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 완화 (조특령 § 35)

현 행	개 정 안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주식,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	☐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도 현물출자 허용

〈개정이유〉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희자산을 이용한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적용례〉 공포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법인령 § 81④)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합병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구분경리) ☐ 역합병(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존속)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존속법인이 본래 보유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 -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 기타의 경우 : 제한없이 공제	☐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 -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또는 그 상호가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시 - 존속법인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은 경우 •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 •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 초과시 • 이월결손금 차이가 50% 초과시

〈개정이유〉

□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한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결손법인
이 우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적용례〉 공포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1)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법인령 § 41)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 서류* 미수취시 한도에 관계없 이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 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

〈개정이유〉

□ 경조사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하기 어려
운 점을 감안
〈적용례〉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손금의 범위 확대(법인령 § 62)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의 범위 ☐ 물품의 수출로 인한 채권으로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 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외국환은행장 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을 추가 예) 대이라크 한국 민간채권 등

〈개정이유〉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예, 건설용역 등)도 물품의 수출
과 동일하므로 대손금의 범위에 추가
〈적용례〉 200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 손비인정(법인령 § 19)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다음 교육훈련비를 지출 하는 경우 손비인정 ☐ 사용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 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등	☐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음 지출에 대해서도 손비인정 ☐ 기업과 교육기관 간 계약에 의 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 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8) ☐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 § 22) 등

〈개정이유〉

□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례〉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법인령 § 44의 2, § 60)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 을 지급하기 위해 ☐ 사외에 실제 불입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 ☐ 손금산입 한도액 : [퇴직금추계 액 -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현 재는 추계액의 40% 한도)]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당기한도 : 1년 이상 근속한 사 용인 등의 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 산입 ☐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 총급여액의 5%로 축소 ☐ 누적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축소 - 추계액의 30%('07~'08년은 35%)로 축소

〈개정이유〉

- '05. 12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 〈적용례〉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은 공포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07)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개인유사회사의 범위(법령 § 86의 2)

〈법개정 내용〉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상 개인과 유사한 SPC에 대해서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 소득공제 배제대상 개인유사회사(SPC)의 범위
 - 사모방식으로 설립되고
 - 개인 2인(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 이상인 SPC

〈개정이유〉

- SPC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정
 - * 개인이 부동산 양도시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SPC를 설립하여 부동산 양도시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종류가 변경되어 과세

〈적용례〉 2006.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6)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법령 § 70)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 ○ 배당 지급법인의 배당지급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로부터 사원(금융기관)이 배당받는 경우 -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 배드뱅크(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등)를 통한 원활한 개인신용 회복을 지원
- 〈적용례〉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법령 § 118)

현 행	개 정 안
□ 부당과소신고금액의 범위에 ○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포함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삭 제〉 *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개정이유〉

- 이전가격 조정은 국가간의 과세권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 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다름
- 국조법 제13조에서도 상호합의결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과소 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적용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1) 통화스와프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법인령 § 73, § 76)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외화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 매연도 말 환율에 의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 ☐ 다만, 환율 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체결한 통화스와프계약의 경우 - 유통화전문회사만 평가 인정	☐ 통화스와프계약의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개정이유〉

☐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하여 외화평가손익과 통화스와프계약의 손익이 상쇄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적용례〉 공포일 이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령 § 78)

현 행	개 정 안
☐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 창투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한 ☐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	☐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 상장주식을 추가

〈개정이유〉

☐ 발행법인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진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

〈적용례〉 200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3)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허용(법인규칙 § 15)

현 행	개 정 안
☐ 건축물부속설비* 기준내용연수 ☐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20~40년)를 적용 * 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 적용 허용

〈개정이유〉

☐ 건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이며, 노후화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

〈적용례〉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납세협력의무 경감

(1)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법인규칙 § 82① 부표서식)

현 행	개 정 안
☐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함께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은 대주주 주식거래분 기재 * 대주주 - 거래소 주식: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 코스닥 주식: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	☐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은 대주주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기재 * 지배주주: ① + ② 요건충족 ①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식 소유 ②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수가 가장 많을 것

〈개정이유〉

☐ 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명단을 파악할 수 있으나 연중 거래되는 모든 주주변동 내역까지 알기 어려우므로

☐ 주식양도명세서 기재대상을 당해법인에서 파악가능한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1.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령§ 23①)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적용시한 : 2005. 12. 31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적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물 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	☐ 2006. 12. 31까지 1년 연장 ☐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좌 동

〈개정이유〉

☐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적용시기〉 2006.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조특령§ 27의 5)

〈법개정 내용〉

☐ 30세 이상·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07년말까지 증여받은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한 후 상속시 정상세율(10~50%)로 정산 ☐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범위, 창업의 범위, 특례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개정내용〉

- ☐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출자지분 : 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
 액주주분* 제외
 - * 상장 :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증여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 : 현금, 채권, 거래소·코
 스팅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 창업자금 특례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
 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미제출시 특례적용이 배제됨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의 날에 창업자금사용내
 역서를 제출해야 함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서 기재내용

증여받은 창업자금내역, 사용내역, 사용관련 증빙 등

※ 창업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불분명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불분명제출 금액×0.3%

☐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정상세율(10~50%)
 로 다시 계산하여 추징

○ 다음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
 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후 3년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경우

○ 10년내 창업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10년내 폐
 업·휴업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수증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
 - 영업상 또는 사업전환 등을 위한 2년내 일시 휴·폐업
 - ※ 추정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 발생일
까지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 가산
- 〈적용시기〉 2006.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 구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 요건 규정(조특령 § 92의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 요건 규정 ○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의 계산 :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건설기간은 제외 ○ 투자재산의 90% 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

〈개정이유〉

- 부동산간접투자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8~35%)하지 않고 분리과세함으로써 10년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
- * 부동산 간접투자자기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116의 2⑤)

현 행	개 정 안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시) - 관광업(1천만불 이상 ") - 물류업(5백만불 이상 ") 〈신 설〉	○ 감면 대상업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의뢰기관 • 투자금액 : 5백만불 이상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를 활성화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

〈적용시기〉

-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축소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조특령§ 66)

현 행	개 정 안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 합리화 -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내 양도시 감면

〈개정이유〉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중 자경하지 않은 농지 상속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전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특령 § 81)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06년말까지) ☐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대상 축소 ☐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개정이유〉

☐ 중산·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3억원 초과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조특령 § 106)

현 행	개 정 안
☐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소매업, 음식접접,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은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삭제 ☐ 주차장운영업*, 자동차 견인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수수료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상 63915) **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개정이유〉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로 조세지원 목적 소멸
 * '03. 8. 21~8. 31(11일간)

☐ 공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조특령 § 106)

현 행	개 정 안
☐ 농협중앙회 및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사업 : 농수산물수탁판매업 등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개정이유〉

☐ 기존조합의 일정부분(유통 등)을 분리하여 규모화·경영효율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실익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조특령 § 106)

현 행	개 정 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세사업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 후생복지사업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연금매점사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 제외	☐ 수상오락서비스업*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892 88921(해수욕장운영업) 88929(7티수상오락서비스업)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

3. 중소기업범위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조특령§ 2① 단서)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상장·등록법인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부채)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포함

<개정이유>

☐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 상장·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경제정책조정회의(05. 12. 9)에서 「중소기업 범위조정(안)」

이 확정되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도 개정됨(05. 12. 27)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조특령§ 2② 4호등)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불인정 ①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③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⑤ 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자산-부채)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개정이유>

☐ 판정기간 확대

☐ 통상 창업후 1~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사업준비기간 이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중소기업청도 설립·연구개발·제품출시·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최초 1순환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보아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3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정

☐ 중소기업 졸업기준 초과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배제

☐ 현행 유예기준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년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례> 2007. 1. 1 이후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IV.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농림특례규정 포함)

1.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74의 3④)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30% ○ 음식·숙박, 운수·통신업:40% * 부가가치율의 조정(법 § 26):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가능	○ 부가가치율 조정 - 소매업: 15%(5%p ↓) - (현행과 동일) - 음식, 숙박업: 30%(10%p ↓) ○ '07년 12월까지 적용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부가가치율 인하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이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소매·숙박업: 3년간 평균부가율이 법정부가율보다 낮음

- 소매·음식·숙박업: '02년 대비 평균부가율 하락

* '97~'04 기간중 음식업 증가율(11%)은 전체 자영업자 증가율(3.5%)의 3.1배

* 부가가치율 추이(%)

구분	'02	'03	'04	3년평균	법정부가율
소매	28.6	9.0	19.4	19.0	20
음식	52.8	50.6	50.5	51.3	40
숙박	29.6	21.0	32.5	27.7	40

주: 부가가치율 산정방법: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 × 100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 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부가령§ 14①)

현 행	개 정 안
☐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경매 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채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수일실만 초래

○ 경매대금의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 경락부동산 부가세 징수내역(과세대상 21건, 96억원)

- 채납건수 20건(95.2%), 채납액 95억원(99.3%)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부가령§ 17②)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 요건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으로 승계 ○ 사업 동일성: 업종변경시 과세 ○ 양도자·양수자의 과세유형 - 일반과세→일반과세: 과세제외 - 간이과세→간이과세: 과세제외 - 일반과세→간이과세: 과세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 사업 동일성 요건 폐지: 업종 변경 등의 경우에도 과세 제외 -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양수하는 경우 과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 적용 배제

<개정이유>

☐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

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령§ 63의 2)

현 행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 범위 • 파산(강제 회)의 포함 • 강제집행 • 사망·실종신고 • 정리계획인가 결정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 채권 등	☐ 대손세액공제 범위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 * 추가 범위 - 행방불명 - 어음법, 수표법,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 자영업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개정내용 포함)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령 § 38)

현 행	개 정 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과세되고 있는 사업 ☐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 도·소매업 ☐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개정이유>

☐ 국가 등이 운영하는 골프장, 부동산 임대업 등 민간과 경

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여 경쟁중립성 확보

☐ 국가 등이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원가로 계상되어 가격을 왜곡시키는 문제 방지

* EU지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업용 소금 과세전환(부가령§ 28)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미가공식료품 ☐ 소금	☐ 공업용 소금 과세전환

<개정이유>

☐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소금으로 부정유통되는 사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06. 7. 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을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부가령§ 2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의 범위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 ☐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제외	☐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도 제외

<개정이유>

☐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융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 33①)

현 행	개 정 안
☐ 채권추심업 면세시한 ☐ 면세시한 : '05년말 ☐ 금융·보험융역 면세 범위 ☐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등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산관리·운용융역	☐ 면세시한 연장 ☐ '08년까지 3년연장 ☐ 면세범위 추가 ☐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산관리·운용융역 추가 -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과세

〈개정이유〉

- ☐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 및 채권추심업 활성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
- ☐ 면세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도 면세를 적용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및 구조조정 지원
- ☐ 다만,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형평성 유지
- 〈적용시기〉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융역 및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규칙 § 11의 5)

현 행	개 정 안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융역 ☐ 부가가치세 면제 ☐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연구융역 ☐ 3년간('08. 12. 31)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연구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이유〉

- ☐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융역 및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외화획득융역 영세율 범위 조정(부가령 § 26①)

현 행	개 정 안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외국인의 범위 - 출국 내국인도 포함

〈개정이유〉

- ☐ 출국하는 내국인도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 〈적용시기〉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제외(농림특례 § 3)

현 행	개 정 안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제외 품목 - 저곡해충약 - 고독성농약 〈추 가〉	☐ 영세율 제외품목 추가 -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 농약

〈개정이유〉

- ☐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시 어독성 농약의 사용 축소 필요
- ☐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년~'03년 5개년 평균)보다 40% 정도 줄이도록 할 계획
<적용시기>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축소(농림특례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 ○ 주행형 탈곡기 ○ 인력분무기 ○ 뽕잎 자르는 기계 ○ 누에올리는 설 ○ 누에고치수확기 등 5종

<개정이유>

□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농림특례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 사료배합기, 육추기, 포유기, 착유기 등 50종	□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개정이유>

□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인 벌통, 채밀기 및 소초세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적용시기>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부가령§ 6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계약서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외화입금증명서 • 재화·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 수출실적명세서의 경우 전자적 제출 가능 -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 전자적 제출 범위 확대 - 내국신용장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경우 이미 전자화되어 활용중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가령§ 80)

현 행	개 정 안
□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 영수증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 영위자 · 소매·음식·숙박업 · 기타 최종소비자 상대업종 ※ 제조, 도매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의 범위 확대 -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 → 모든 일반과세자 ※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 －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56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 설치 : 국세청 － 구성 : 3·4급 1인, 민간위원 10인 － 기능 : 납세자가 신청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정성 여부 심의	○ 국세청위원회 구성·기능변경 － 구성 : 3·4급 3인, 민간위원 9인 － 기능 : 지방청위원회의 심의결정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등 ○ 지방청위원회 설치 허용 － 구성 : 3·4급 2인(본청 1, 지방청 1), 민간위원 5인(본청위원 3, 지방청위원 2) － 기능 : 현행 국세청위원회 기능 수행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 19의 3 ①항 7·8호, § 31 ③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 가족이 구입하는 경우 첨부서류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승용차 구입시 특수세 면제	□ 장애인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 완화 ○ 외국인등록증 등 동일세대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갈음

〈개정이유〉

□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이 없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으로 동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세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이 영 시행 후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폐기 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39 ①)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법 § 34①개정내용〉

-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될 경우 또는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세액 환급(§ 34①)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환급신청 ○ 환입·파손 또는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 신청 절차 규정 ○ 폐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 법 개정에 따른 절차 규정

〈적용례〉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 규정(§ 5)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현 행	개 정 안
□ 1회당 구입한도 및 품목당 판매 한도 ○ 35만원	○ 40만원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구입한도 등을 평균환율을 감안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5-1.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2, § 6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 ○ 분기	○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은 1개월 ·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하되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 - 다만, 1년 이내 정산기간 변경은 제한
□ 정산신고 기간 ○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	○ 업체별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

* 일괄납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가 매 건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간(분기)별로 합산하여 납부

* 정산: 수출기업이 수출후 환급받을 세액과 일괄납부할 세액과의 상계처리후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

〈개정이유〉

□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 완화

〈적용시기〉2006. 4. 1부터 시행

5-2. 과다 환급금 추징시 등 가산금 하향 조정 (§ 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금 가산금 ○ 추징시 - 100원에 1일 5전(년 18.25%) ○ 자진신고시 - 1일 1전(년 3.65%)	- 1일 10만분의 39(년 14.235%) - 1일 10만분의 10(년 3.65%)

〈개정이유〉

□ 시중금리 하락 등에 따라 추징시 환급 가산금의 이율 하향 및 이율단위 조정

*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체납세액에 부과되는 증가산금 매월 1,000분의 12(년 14.4%)와 형평 유지

○ 자진신고시 환급 가산금의 이율단위를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 45조의 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 ○ 매각한 경우 : - 매각금액의 2%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 ○ 매각한 경우 : - 매각금액의 2.8% ※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수수료를 정함

〈개정이유〉

□ 공매대행 수수료 중 매각수수료를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하여 공매대행수수료 현실화

〈적용례〉2006. 2. 1부터 시행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이 자료는 2006년 1월 2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에서 발표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 관련 세법의 국회통과후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06.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대상 법령(8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 중부세 세대별 합산에 따라
- 합산대상 세대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고,

- 그 중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되, 나머지 주택 소유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

②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이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

③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을 중부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여

- 실수로 목적으로 대체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세를 비과세

② 양도세가 증가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신설하여
- 근무상 형편, 혼인 및 노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③ 양도세가 증가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채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을 조정하고

- 현행 농지대토 비과세에 대하여 농특세가 면제되던 것과 동일하게 감면제도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농특세를 비과세

I. 종합부동산세 관련

1.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및 납세의무자 규정

〈법 개정 내용〉

- ◇ 종부세법 개정으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 주된 주택소유자에게 납세의무 부과하고, 타 세대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 부과
 - 세대원 및 납세의무자(주된 주택소유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하계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개정이유〉

- 세대원간 분산을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나. 종부세 납세의무자

〈개정내용〉

- 주된 주택소유자는
 -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
 -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
-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개정이유〉

- 보유세의 담세능력은 소유한 재산가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06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가.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

〈개정내용〉

- (원칙)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합산
- (예외)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 3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

다.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 유예

〈개정내용〉

-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
 -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
 -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개정이유〉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같이 취급

〈적용시기〉 '06년 중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2. 어린이 놀이방 중부세 합산 배제

〈법 개정내용〉

- ◇ 세대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부세를 과세하나
 - 임대주택, 종업원 기숙사·사원용 주택 및 미분양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

〈개정내용〉

- 현재,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중부세를 면제(지방세법 § 272, 중부세법 § 6)하고 있으나
 -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도 중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
- ※ 합산배제요건
 -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 －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것
- * 단, 이사(계속 보육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수용,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로 의무 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허용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개정이유〉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및 지원
 - * 가정보육시설수: 전국 11,178개소
 - 평균건평 36평, 자가 55.3%, 임대 45.3%, 기타 1.2%

〈적용시기〉 '06년 중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 ※ 어린이 놀이방은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II. 양도소득세 관련

1.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소득령 신설)

〈법 개정내용〉

- ◇ 1주택과 1입주권(재건축·재개발)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로 목적으로 입주권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3년 보유 중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개정내용〉

- 실수로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였다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
 - ①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로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

② 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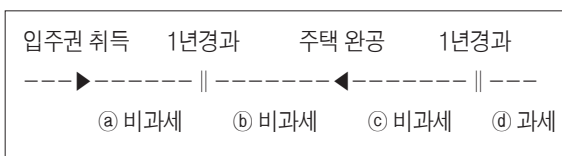
-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그림 중 ㉓의 경우)
-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 아래 요건(㉑+㉒+㉓)을 충족하는 경우(그림 중 ㉒, ㉓의 경우)

- ㉑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것
- ㉒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㉓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아래 요건(㉑+㉒+㉓)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㉑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㉒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㉓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적용시기> '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

2.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

〈법 개정내용〉

-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06년), 양도세 50%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가. 보유주택수 계산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광역시 중 군지역
 - 수도권 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도지역

광역시 중 군지역

수도권 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 분	대 상 주 택	감 면 요 건	감 면 율
장기 임대주택 (§ 97)	○ 86. 1. 1~00. 12. 31 신축주택 ○ 85. 12. 31 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5호 이상 임대사업자가 ○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매입임대 •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50% 감면 •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 건설임대 •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신축 주택임대 (§ 97의 2)	○ 99. 8. 20~01. 12. 31 건설 ○ 99. 8. 20~01. 12. 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2호 이상 임대사업자가 ○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 98)	○ '95. 10. 31 현재 미분양주택 ○ '98. 2. 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97. 12. 31 또는 98. 12. 31 이전 분양취득하여 ○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 중 선택 적용
신축 주택취득 (§ 99)	○ 98. 5. 22~99. 6. 30 자기건설 ○ 98. 5. 22~99. 6. 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 5. 22~99. 12. 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초과) 제외	-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 면제 ○ 취득후 5년 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신축 주택취득 (§ 99의 3)	○ 01. 5. 23~03. 6. 30 자기건설 ○ 01. 5. 23~03. 6. 30 분양취득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02. 12. 31) * 고가주택(6억원 초과) 제외	-	(위와 같음)

(ㄴ)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5년 이상	149㎡ (45평) 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5호 이상	10년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	2호 이상	5년 이상	"

(ㄷ)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
원용주택)

(ㄹ)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
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ㄹ)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②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
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
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 이상 거주
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③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④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⑤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
청장으로부터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
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한 주택

⑥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
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
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
주택

〈적용시기〉'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소득령·법인령 신설)

〈법 개정내용〉

◇ 비사업용 내대지·잡종지와 부채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에 대하여 양도세 실효레가 과세('06년) 및 양도세 60% 중
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 비사업용 내대지·잡종지와 농·임·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07년)

○ 비사업용 내대지·잡종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가. 농지(전·답·과수원)

□ (원칙) ①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② 농업 주업법
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 배제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결 시·군·구에 거주

**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농업인 법인.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
리하는 경우 포함

□ (예외) ①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 상속·이농농지(상속·이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

② 종중소유 농지(2005. 12. 31까지 취득분에 한함)

③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 12. 31까지 양도
에 한함)

※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나. 임야

□ (원칙) ① 개인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
아 사업중인 임야와 ② 임업 주업법인* 및 독립가**인 법

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만 중과 배제

* 임업이 투자금액(자산가액)이 가장 큰 사업인 법인

** 법인 독립가(篤林家) :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등

- (예외) ①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 ②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
- 임업후계자,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묘목 등을 생산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임야

다. 목장용지

- (원칙) 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위 내의 목장용지는 중과 배제

* 주업 기준은 농업과 동일.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주업법인에 포함

** 지방세법과 동일 : (예) 한우 두당 13.25㎡, 돼지 5두당 63㎡

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 (원칙) ①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 ②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및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는 비사업용

*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의 중과 대상에 포함

- (예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사업·거주에 필수적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를 제외

-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5배 이내)

- 체육시설업용 토지(관련법령 시설·설비기준 충족)

- 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 옥외식물원, 주차장 등)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설비기준 충족)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 토지

○ 다만,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을 적용

- 주차장업용 토지(비율 3% 이상)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비율 20% 이상) 등

마.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

○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 (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 사용금지·제한 기간

* 다만, 사용 금지·제한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有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등

○ (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등
 - (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

4.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 (소득령 신설)

〈법 개정내용〉

- ◇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 시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와 같이 양도세 과세(9~36%) * (유형 1) 일반법인 -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 자산가액의 50% - 양도자의 지분비율 ≥ 총주식의 50% - 발행주식총수 중 양도비율(3년간 누계) ≥ 50% (유형 2) 특정업종 영위법인 -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 자산가액의 80%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업

〈신 설〉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
-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 자산가액의 50%

〈개정이유〉

-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기준 신설
- 〈적용시기〉 '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지대토 감면요건 조정 및 농지대토 감면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조특령·농특령 신설)

〈법 개정내용〉

-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5년간 1억원 한도)로 전환
-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농지 대토 감면(비과세)요건 ○ 자경요건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 ○ 대체취득 요건 •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 이상 취득 □ 감면제도로 전환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감면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 농지 대토 감면요건 완화 ○ (현행과 동일) ○ 대체취득 요건 완화 • 종전농지 면적 1/2 이상 또는 • 가액의 1/3 이상 취득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개정이유〉

- 지가상승 요인인 농지대토수요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도모(8·31대책시 기발표)
- 〈적용시기〉 '06. 1. 1 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 이 자료는 2005년 12월 15일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 정부는 금년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 15~12. 20)하고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
결을 거쳐 12월말까지 공포 · 시행할 계획임

주요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이중공제 배제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여 '06년부터 적용함

②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
법인 · 신탁 ·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하도록 함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 현행규정에서는 위성디지털방송(DMB) 사업자가
개별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 이동통신회사가 개별이용자에게 이용대금청구서 발
급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① 의료비·신용카드공제의 이중공제 배제 유보(부칙)

현 행	개 정 안
○ '05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이중공제 배제시기를 1년 연장하여 '06년부터 적용

〈개정이유〉

- 국세청의 현재 전산능력으로는 '05년 의료비 중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분 내역을 구분하여 제공하기 어렵고
- 의료법 시행규칙이 '05. 10월에 개정되어 그 이전에 지급된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에 결제유형(현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분표시가 곤란하여 근로자 스스로도 의료비에 대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 ⇒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소지 방지

〈적용례〉 '05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과 같이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 '05년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었음('05.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개정이유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배제

-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 '05. 11월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결제방식별로 내역의 구분표시가 가능해서* 10월 이전 지출분의 경우 결제방식별로 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 '05. 10월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료비영수증 서식)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의료비영수증에 현금분과 신용카드분의 구분이 가능

-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시에 확인하는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불편이 예상됨

- 따라서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06년 연말정산분부터 선택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의료비 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는 의료비 결제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

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①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110)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 등이 개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14%)하되 ○ 금융기관에게 이자소득(채권이자소득포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면제	○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개정이유〉

- 금융기관 등이 신탁,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의 형평 감안

〈적용례〉 2006. 1. 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보완 (§ 58¹¹)

현행	개정안
□ 위성DMB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위성DMB 사업자가 이용자 개별로 세금계산서 교부	□ 위성DMB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게 대가징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 DMB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이동통신회사가 이용자에게 영수증 교부 가능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위성DMB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해지고 세금계산서 교부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성DMB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가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적용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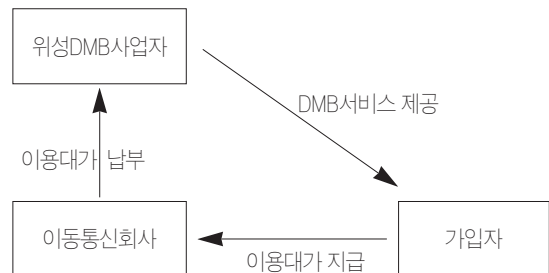
-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1) 위성DMB 서비스 체계

- 위성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란
○ 휴대용 수신기(휴대폰 등)를 통해 공간적 제약 없이 영상·음성·데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 우리나라는 '05. 5. 1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

□ 위성DMB의 서비스 체계



- 위성DMB사업자 : 위성을 통해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송신
○ 이동통신회사 : 고객 유치, 유지, 해지관리 및 요금청구, 수납업무 대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대가 수령
○ 가입자 : 휴대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대가를 이동통신회사에 지급

2) 현재도 금번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단순화한 사례가 있는가?

- 현재도 전기통신사업자(A)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B)
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다른 통신사업
자(B)에게 대가징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A)가 타 통신사업자(B)에게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B)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예)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을 통해 국제전화를 하여
한국통신의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예한국
통신→이동통신회사→가입자 등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 재정분석제도 혁신과 분야별 분석결과 -

※ 이 자료는 2005년 12월 19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실시단에서 발표한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 재정분석제도 혁신과 분야별 분석결과 -」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금년도 재정분석은 기존 10개의 정태적 지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에 의거 재정관리 개선 노력도 등의 추세치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 지표로 확대운영하였다

○ 지방재정의 상태와 관리·개선·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지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지자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선진국 및 OECD 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하여 재정 전문가 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고,

※ 세입부분의 지방세징수율, 지방채무상환비율, 세출부분의 행사·축제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등 30개 지표: 붙임 참조

□ 또한, 공무원 중심의 분석제도에 대한 분석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하였고, 분석결과와 재정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

관련 대학 교수, 관련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40명의 재정 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 실무지원 공무원 21명을 포함 12개반 61명으로 재정운영 우수기관 등 67개 단체에 대하여 Random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통계분석을 위해 지표의 특성과 통계자료의 구축상태에 따라 추세분석과 단년도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 추세분석은 지방세수안정도 외 5개 지표, 단년도 분석은 추세분석지표 외 모든 분석지표 실시하였고,

□ 점수산정 방식은 총 1,000점 만점에 분석지표별 적정점수를 부여하여, 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으로 제도혁신의 첫 해인 만큼 비계량지표를 최소화하여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적용하였고,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 통계분석 및 점수산정 방법은 관련 전문가 협의로 확정

□ 그 결과 특별·광역시와 도의 기능을 고려하여 5개 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분리하여, 광역단체는 3등급, 기초단체는 5등급의 A, B, C, D, E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치단체별 분석결과: 붙임 참조

□ 자치단체별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상태나 재정역량이 높은 단체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으로 개선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 또한 지방세 징수분야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긍정적인 세입확보 노력이 나타났고 울산, 제주, 영광군 등은 지방세 징수율이 98% 이상으로 매우 우수하고,

※ 지방세징수율: 94.4%('00)→96.3%('02)→95.8%('04)

※ 지방세채납징수율: 22.6%('00)→28.2%('02)→32.1%('04)

○ 지방채무상환비율이 감소되고 있어 채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의 채무상환비율이 0.15%로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상환부담이 가장 적은 반면,

※ 지방채무상환비율: 6.0%('01)→5.2%('02)→4.6%('04)

–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채납채권비율이 높게(전국 평균 23.5%) 나타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은 다소 증가추세를 보여 언론,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는 부정적 현상이 계량적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서울, 경기도 등은 세출예산의 0.1% 미만이며, 해남군은 민간이전경비비율이 0.1%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 행사·축제경비비율: 0.39%('02)→0.38%('03)→0.49%('04)

※ 민간이전경비비율: 5.1%('02)→5.5%('03)→5.8%('04)

○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그 비중이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관측되는 반면, 세입예산의 반영비율,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투명성은 선진형 수준에 미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금년도 재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엇보다도 재정 관리(노력, 개선, 창의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재정책임성 향상을 위한 징세노력, 주민·언론·시민단체 등의 관심영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태변화 유도, 국가정책의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자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 향후, 지자체별 재정분석결과(30개 지표별, 동종 지자체 자료 등)를 통보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예산회계제도 등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예산회계제도의 혁신과 함께 재정분석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붙임1)

등 급	특별시 및 광역시	도
A	서울시, 울산시 (2개)	충남도, 전북도, 경남도 (3개)
B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3개)	경기도, 충북도, 경북도 (3개)
C	대구시, 대전시 (2개)	강원도, 전남도, 제주도 (3개)

등급	시	군	구
A	(15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양주시, 동두천시, 태백시, 삼척시, 공주시, 아산시, 남원시, 나주시, 영천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17개) 여주군, 정선군, 순창군, 영양군, 강진군, 해남군, 성주군, 영덕군, 의성군, 남해군, 거창군, 함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남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13개)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 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B	(15개) 고양시, 의정부시, 속초시, 보령시, 서산시, 순천시,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제주시, 서귀포시	(18개) 영월군, 평창군, 청원군, 보은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장흥군, 장성군, 완도군, 군위군, 청송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함양군, 북제주군, 남제주군	(14개)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남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C	(17개) 광명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시, 김포시, 포천시, 강릉시, 충주시, 제천시, 익산시, 여주시, 광양시, 김천시, 영주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18개) 울주군, 달성군, 연천군, 홍천군, 영동군, 증평군, 금산군, 홍성군, 당진군, 진안군, 무주군, 고창군, 담양군, 영광군, 진도군, 고령군, 칠곡군, 함안군	(15개) 서울 강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D	(15개) 이천시, 광주시, 의왕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천안시, 논산시, 계룡시, 정읍시, 목포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18개) 기장군, 강화군, 횡성군, 양양군, 인제군,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 부여군, 서천군, 원주군, 부안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무안군, 봉화군	(14개) 서울 용산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동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부산 금정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인천 동구, 대전 동구
E	(15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청주시,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경산시	(17개) 웅진군, 가평군, 양평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 고성군, 괴산군, 음성군, 연기군, 장수군, 임실군, 함평군, 화순군, 구례군, 신안군, 청도군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부산 중구,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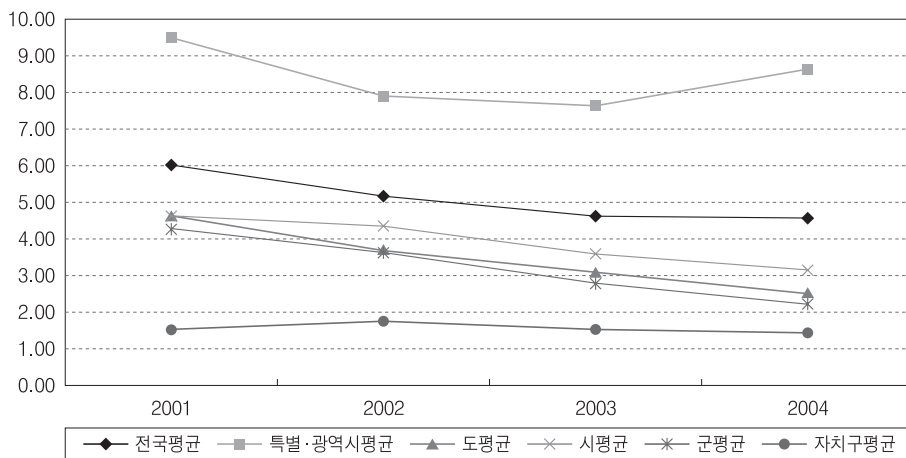
※ 등급별 내에 있는 자치단체는 시·도/시·군·구 직제순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및 점수산정방법(붙임2)

분 0(분석지표)			분석대상기간
I. 세입구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2. 지방세징수율 3. 지방세징수율 증감률 4. 지방세체납징수율 5. 지방세과오납비율 6. 지방세수예측도	5년경향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 증감률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5년경향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II. 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 13. 인건비비율 14. 행사·축제경비비율 15. 민간이전경비비율 16. 투자비비율 17. 연말지출비율	단년도 단년도 3년경향/단년도 3년경향/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III. 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9. 체납채권비율 20. 추경예산편성비율 21. 세입예산반영비율 22. 순세계잉여금비율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단년도
IV. 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율 24. 지방채이자부담률 25. 지방채무잔액지수	4년평균 단년도 단년도
V. 재정투명성		26.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27.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단년도 단년도
VI. 국가정책이행		28.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 정도 30. 사회복지예산증감률	단년도 2년경향 단년도

지방채무상환비율(붙임3)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국평균	6.01	5.17	4.61	4.60
특별·광역시평균	9.51	7.93	7.64	8.68
도평균	4.64	3.69	3.10	2.54
시평균	4.65	4.36	3.61	3.16
군평균	4.27	3.60	2.78	2.20
자치구평균	1.54	1.78	1.54	1.43



○ 지방채무상환비율은 도, 시, 군, 자치구의 경우 연도별로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특별·광역시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 특별·광역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지방채무상환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2006년 경제운용방향

※ 이 자료는 2005년 12월 28일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2006년 경제운용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1. 3년간의 경제운용 성과

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경제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시스템 안정과 경기회복 토대 마련

-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따른 시스템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내수부진 속에서도 무리한 경기 부양보다 구조조정을 지속하여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로 진입

②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 기업·금융·노사·공공부문 개혁 및 선진통상국가 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 등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러한 큰 틀에서 중장기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
- 기술혁신, 인력양성, 신성장동력 확충,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추진

③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동반성장 시책 추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노력 강화

- 기초생활보장 확대, 취약계층 자활지원 등 복지사각지대의 축소 및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

◇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선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

<05년 거시경제운용 성과>

- 05년 경제운용방향 마련 당시(04. 12월) 정부는 정책목표 성격의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
- 그러나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3.0%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이 지연
-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 및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 경제운용이 가능하도록 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05. 7월)하면서 경제 전망을 수정
- 성장률 : 5% 수준 → 4% 내외
- 일자리 창출 : 40만개 → 30만개 수준
- 소비자 물가 : 3%대 초반 → 3%대 초반
- 경상수지 : 200억불 수준 → 140억불 내외

□ 최근까지의 경제지표 동향으로 볼 때,

- 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4/4분기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연간으로는 4%를 소폭 하회할 전망
- 일자리는 하반기중 큰 폭의 고용 개선에 힘입어 연간 30만개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대 후반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경상수지는 건조한 수출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 180억불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2.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과제

① (현 상황 평가)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높아지고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

- 그러나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투자둔화 등으로 과거 수준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성장의 생산·고용 파급효과도 약화

② (구조적 과제)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지만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음

-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이 둔화되고 있어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 중국경제 부상 등으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 경쟁과 개방 심화과정에서 나타난 소득계층·산업·기업간 격차 확대를 시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복지시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복지수요, 고령화·저출산, 남북관계 등 재정소요에 대응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

③ (사회적 갈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조화 등 공감대 형성과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가 다수

* 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시장성, 대외개방, 노사관계, 환경과 개발 등 다원적 가치의 조정문제

◇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주체의 적응력을 높여 동반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필요

II. 2006년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1. 대외 여건

① (세계 경제) 05년에 이어 건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일본과 유로 경제도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세계 교역량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에 따라 05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주요국 성장률 전망〉

(단위: %)

	잠재성장률	05년 전망		06년 전망	
		IMF	OECD	IMF	OECD
세계 성장률	-	4.3	2.7	4.3	2.9
미 국	3% 내외	3.5	3.6	3.3	3.5
유 로	2% 내외	1.2	1.4	1.8	2.1
일 본	1.5~2.0%	2.0	2.4	2.0	2.0
중 국	8% 내외	9.0	9.3	8.2	9.4
세계 교역량	-	7.0	7.3	7.4	9.1

주: IMF(05. 9), OECD(05. 11) 기준. 단, OECD 세계 성장률은 회원국 기준

② (국제 유가) 원유 수급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배럴당 50\$대의 고유가 추세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 수요 증가세 둔화, 美 멕시코만 생산회복 등으로 05년에 비해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기관별 유가 전망〉

(Dubai油, 기간 평균, \$/bbl)

(전망 시기)	04년 실적	05년 실적	06년		
			10월	11월	12월
美 에너지 정보청(EIA)	33.6	49.4	57.5	57.4	56.3
美 캠브리지에너지研(CERA)			49.5	48.0	52.3

③ (국제 금융시장) 상반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당분간 美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약세 요인 상존
- 美 정책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대외불균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부각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소지

④ (세계 IT 경기) 상반기중 재조정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주요 예측기관 IT경기 전망〉

(단위: 증가율, %)

	2004	2005*	2006*
· 반도체(WSTS*, 05.10)	28.0	6.6	8.0
· D램(Merrill Lynch, 05.9)	61.0	△2.0	9.0
· 플래시메모리(Merrill Lynch, 05.9)	91.0	48.0	25.0
· 휴대폰(Gartner*, 05.8)	29.6	15.5	8.8

주: 반도체, D램, 플래시메모리는 매출액 기준, 휴대폰은 물량 기준

출처: WSTS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Gartner : 정보기술산업 연구조사 기관

◇ 06년 대외 여건은 전반적으로 05년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 경제의 고성장 지속여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등 불확실 요인들이 상존

* 조류독감(AI) 확산시 국가간 교역 위축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

2. 국내 여건

①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나,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상향에 따라서는 이자부담으로 소비회복이 제약받을 소지

* 가계대출 연체율(% , 기말) : (02)1.7→(03)2.2→(04)2.2→

(05. 10)1.5

* 개인 금융부채/가처분소득(%) : (02)129→(03)131→

(04)132→(05e)130 내외

- 내수 회복과 기업수익성 개선 등 설비투자 여건은 호전될 전망이다, 건설경기는 둔화세 지속 소지
-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② 체감경기의 개선에 시일이 좀더 소요되고,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가 증가

- 내수회복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여건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공급과잉 등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

* 과잉진입 응답률(%) : 이·미용 78.6, 편의점 68.4, 음식점 68.0, 의류 61.0

- 저소득·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양극화 완화·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조세수입 증대에는 어려움이 수반

③ 06년 지방선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정치·사회적 일정이 경제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소지

3. 경제 전망

① (성장) 잠재 성장을 수준인 5% 내외 전망

- 민간소비는 그간 부진했던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중반의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으로 순환적 부진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건설투자는 둔화요인이 있으나 공공부문 공급확대, 민자사업 본격화 등으로 급격한 위축은 없을 전망
- 수출은 해외수요의 지속과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두자릿수 증가세 지속 전망

② (고용) 추세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증가세(35~40만명) 전망

- 건설업 등의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에 따라 제조업 고용둔화세가 개선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예상

③ (물가) 소비자 물가 3% 수준, 근원 물가 2%대 후반전망

- 내수회복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05년보다 확대되었으나,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유가 등 비용요인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전망

④ (경상 수지) 상품수지 흑자 폭은 05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체로는 05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150억불 내외 흑자 기조 유지 전망

⑤ (종합 평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2006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고용 전망

	05년 실적	06년 전망
■ 경제성장률	3% 후반	5% 내외 ¹⁾
■ 취업자 증가	30만명 수준	35만~40만명
■ 소비자 물가	2% 후반	3% 수준
■ 경상 수지	180억불 수준	150억불 내외

1) 2006~07년중 잠재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2008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이 가능할 전망

- 회복 속도와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망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잠재 성장 수준으로의 회복 의견이 지배적
- ※ 경제성장률에 대한 합의 전망치(Consensus forecast) : 평균(Mean) 및 중위(Median) 전망치 5.0%

IMF	OECD	World Bank	Global Insight	한국은행
5.0	5.1	5.1	6.0	5.0
KDI	예산정책처	금융研	삼성研	LG研
5.0	4.7	4.7	4.8	4.6

주: 합의 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구 및 민간 연구기관의 성장 전망치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의 단순 평균치와 중위치를 사용

〈정부 경제 전망의 성격 및 전망 방식〉

- 그간 정책적 의지를 담은 목표 성격의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였으나, 전망과 실적간 괴리 등 문제점 야기
- 전망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06년 전망부터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거시경제 전망 T/F”를 통하여 전망 작업을 진행
- 정부 전망치에 대한 판단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의 전망치(consensus forecast)도 제시
- 거시경제 T/F와 재정전망협의회, 세수추계 T/F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거시전망과 재정전망 간의 연계성 강화

III. 2006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① 2006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 이러한 바탕 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반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점차 이동함으로써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

② 이를 위해 5대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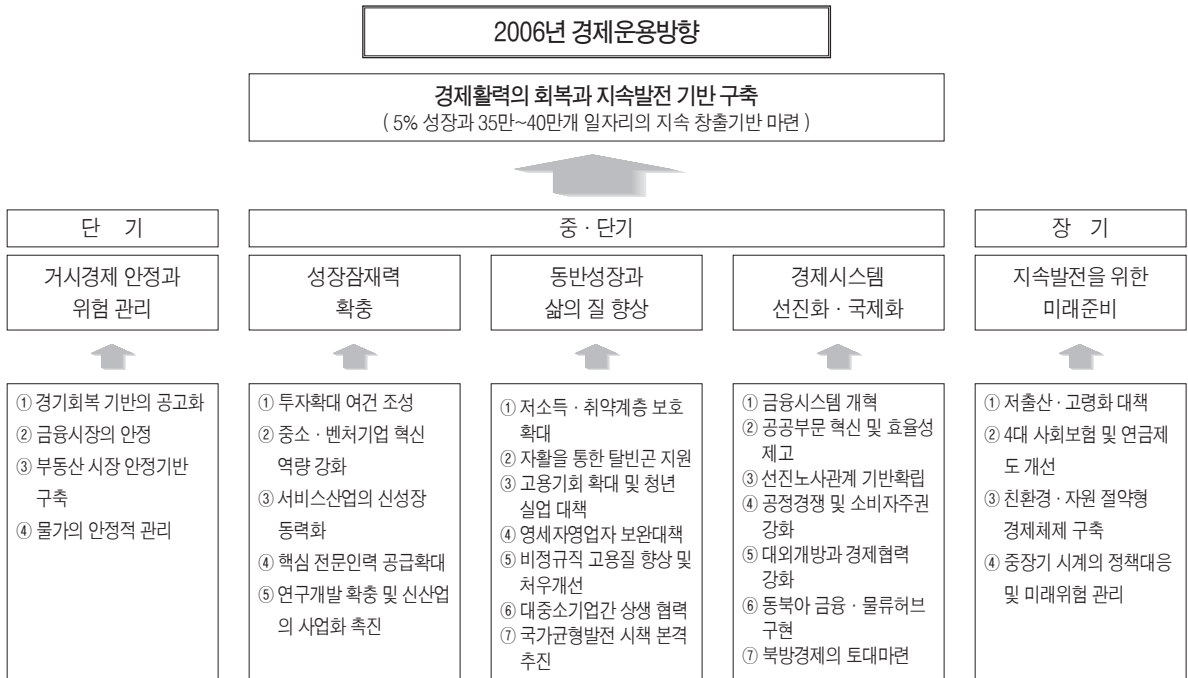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06년 거시경제 전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조성과 위험요인을 관리
- 중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과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지

속 성장의 토대 마련

-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향후 위험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 등 미래에 대한 착실한 준비 추진
- ⇒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 연내 가시적 결과도출이 필요한 10대 중점과제를 집중 관리

③ 이와 함께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갈등과제에 대하여는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합의와 원칙을 도출하여 국가역량을 극대화

- ※ 전략적 의사결정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과제(예시)
: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지배구조 개선, 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방향, 대외개방, 재정지출 소요 수준 및 충족방안 등



〈참고 1〉 외국의 경제운용 주요이슈와 정책대응 방향

① 주요국의 경제정책 동향을 보면 거시정책은 각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과 자산 버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증점정책 분야로서 ① 경제시스템 혁신, ② 미래 경쟁력 강화, ③ 사회적 약자 지원, ④ 고령화와 재정안정, ⑤ 고 유가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② 각국의 05~06년중 경제정책의 주안점

○ (미국) 경제자문회의(CEA)의 연례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05. 2월)의 일부)에서 재정·세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이민정책, 혁신 및 정보화 등을 추구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중장기 발전계획(案)을 통해 안정적 고도성장, 자주 혁신능력 제고, 효율적 에너지 활용, 都農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방안 발표

○ (일본) 내각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05. 6월)」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책,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 등은 고용증진, 재정적자 축소(GDP 3% 이내) 및 조세체계 단순화, 파리 소요사태에 대응한 사회통합 등을 중점 추진

○ (싱가포르) 재무부는 경제·사회 정책운영 방향(Budget Initiatives, 05. 4월)에서 소득세를 인하, 금융·물류중심지(Hub) 육성, 사회복지 강화 등을 제시

〈참고 2〉 2006 경제운용방향 설문 결과

□ 2006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정부-KDI 공동으로 전문가(324명), 일반국민(1,024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① 05년 대비 2006년 경제전망 : 금년보다 나아지거나, 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전문가 95.4%/일반국민 77.4%)

	크게 호전	다소 호전	비슷한 수준	악화	크게 악화
경제전문가	1.2	51.5	42.6	4.3	0.3
일반국민	0.9	23.9	52.6	19.0	3.4

② 2006년 경제운용 최우선 목표 : 경제전문가 다수는 '경제활력 회복'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로 답변

	경제활력회복	일자리창출	선진시스템 구축	고부가가치 경제
경제전문가	62.3	9.9	10.2	6.8
일반국민	32.6	38.7	6.4	8.4

③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경제전문가는 '일자리 창출', 일반국민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답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복지지출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경제전문가	21.0	56.2	2.5	19.8
일반국민	15.6	32.8	8.0	43.4

④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 경제전문가는 투자확대(42.6%)를, 일반국민은 중소/벤처/서비스산업 발전(18.0%)과 거시경제 안정(17.6%)을 주문

	투자확대	규제완화	거시경제안정	중소벤처·서비스업발전	국가균형발전
경제전문가	42.6	13.9	13.3	9.3	5.2
일반국민	13.9	8.5	17.6	18.0	12.4

□ 2006년 경제전망에 대한 다른 기관(국회예산정책처·시사포럼,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설문조사결과도 금년 조사와 유사

IV. 5대 중간목표별 정책 과제

1.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조성 및 위험관리

①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운용

-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방위험도 있으므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 대응
-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상·하반기 간에는 고르게 집행

* 06년중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사업비 기준 52% 수준 집행(통합재정기준 50% 예상)

- 실물경기과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
- BTL·BTO 등 민간투자 사업은 내실 있는 추진에 중점

* 06년 예산 집행규모 : BTL 3조~4조원, BTO 2조~3조원 수준

② 금융시장의 안정노력 강화

- 우량기업 주식의 공급확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 장기국채 발행, 외국인 장기 채권매매 허용, 채권소액거래 활성화 등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수급안정 도모
- 가계·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도하고 신용·금리 위험관리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 노력 강화
- 외환시장의 비정상적 급변동에 대한 시장안정노력 지속

③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 8·31 부동산정책에서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
- 주택 최초구입자금, 금리우대 모기지론 등의 원활한 공급,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정책 추진

- 수도권에 9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실천적 공급정책 추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구축,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직주근접형 주거지원을 위한 도심지내 임대주택 비축 활성화 등 주택·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 택지공급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임대차 보호강화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

④ 경제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국제원자재·농축수산물 등의 수급불안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 물가안정기조 정착 등을 위해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수수료 협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 06년 상반기 공공요금 조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원가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 개편안 마련

- 07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

* 물가안정목표제는 韓銀法에 의하여 韓銀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현행 韓銀 중기물가안정목표 : 04~06년 평균 3.0±0.5%]

2. 성장잠재력 확충

① 투자확대 여건 조성

- 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의 보완 등 기업환경 개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개정)
-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 공공연구시험기관 등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허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공제율 10→7%), R&D
세제지원, 설비자금 공급 확대*등 세제·금융 지원 지속

* 산업은행 설비자금 대출(조원) : (04년)6.1→(05년)7.1→(06
년 계획)9.0

-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민·관투자협의회 등을 통해 기
업의 개별적 투자애로를 발굴·해소

○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비전 및
전략을 수립(06. 1/4)

* 신규·증액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 100개사를 선정, Needs
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
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06. 2/4)

* R&D센터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요건
완화 등

○ 규제개혁 노력 가속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06. 6월) 및 하위법령 마련
등 토지이용규제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산업안전·보건, 기업공개·시장제도, 환경관련 허가·
보고절차 규제 등 21개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06. 상)

②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창업활성화 등 창의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 선 추진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서류의 표준화·간소화
등 창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개선 (상법개정)
- 기술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해 신·기보

의 연대입보 기준 완화

-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 스스로의 선별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개편방안(05. 6월)을 차질없이 추진

- 신용도·이용기간·금액 등에 따른 보증료 및 부분보
증 비율 차등 운용 확대
- 금융기관 출연율 인상(현행 0.3%→06년 0.4%) 등 보
증기관의 건전성 제고
-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 금리 차등화, 상환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수요자 편의형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화

- 사업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
융·세제 지원*(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

* 분할, 합병, 영업양도·양수를 통한 사업전환시 관련 절차 간
소화, 사업전환용 자금융자, 부지를 처분하여 설비취득시 양
도세 감면 등

-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활성화

○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일정물품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하 는 경쟁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의무화(06. 1월 시행)

③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 업종별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법률) 외국변호사의 건전한 국내활동 보장을 위해 외
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외국법자문사법’ 제정
(06년))
- (디자인) ‘일류상품디자인브랜드개발사업’ 확대(05
년 20억원→06년 30억원) 등 우수 디자인기업의 경
쟁력 확보 지원

- (방송·광고) 외주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장을 육성하고 방송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기술중심의 계약제도를 활성화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건설사업 관리 등 관련분야 제도개선 추진
- (보석·귀금속) 유통구조를 양성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RFID 시범사업 검토, 양성화를 위한 세제 보완 등)

○ 관광·레저시설 확충 등 문화·관광서비스업 발전

-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카지노사업 인허가 관리권한의 제주도 이관 등)
-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공공형 대중골프장 건설 추진

○ 사회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제고

- (교육)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수 확대 등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 (의료) 의료기관의 외부자본기반 강화, 국민의료비용 급증방지 방안 마련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서비스업의 경쟁력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평가지표를 개발

④ 핵심 전문인력의 공급확대 추진

- 제2단계 BK21 사업*에서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공직 진출 등에서 이공계 우대

* 06~12년간 추진, 1단계보다 연 지원예산 증액(2,000→3,000억원)

- 외국전문인력 적극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국적 부여요건 완화 검토

* Gold Card 소지자 등의 복수사증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무인자동심사대' 등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 일관된 산업별·직업별 국가인력수급전망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정비

* 전망전담조직 설치 및 실시기관 선정, 직업분류체계 표준화, 기초통계 확충 등

⑤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시행(06. 상)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06. 3/4)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연구개발성과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Connect-Korea 사업 등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촉진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통합관리(산학협력촉진법 개정)

- 대학·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지·연구소 지역내 공장설립 허용 및 각종 부담금 면제(벤처특별법 개정, 06. 상)

* 예)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美),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英), 칭화대(中)

- '전략적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06. 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

3.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① 저소득·취약계층 보호확대 등 사회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143→162만명) 및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06년 6만회)

-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20%→130%이하) 등
- 노인 일자리를 확충(3.5→8만명)하고,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인상 및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18→62개소)
-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주택전세자금 지원(1.6조원) 지속
- * 매입임대: 연간 2,000호 → 연간 4,500호(15년까지 총 5만호) 공급
- * 전세임대: 연간 1,000호(15년까지 총 1만호 공급)

②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 07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06년에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마련(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운용)
-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을 확대(6→7만명)하고, 근로유지형에서 시장진입형 사업* 위주로 전환
- * 집수리, 폐자원 활용 등 정부투입 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2~3년)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
- 휴면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 채원 등으로 적극 활용
- * 다른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06년 20억원)과 연계

③ 고용창출 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을 강화

- 예산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 * (04년)840억원,30천명→(05년)1,691억원,69천명→(06년)2,908억원, 134천명

** 시범사업(60억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및 관련 법률 제정

-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고, 우수 민간기관에 취약계층 취업지원 업무 일부를 시범위탁하는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
- 비정규직·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 * 비정규직 수감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실시(06년 5,000명, 62억원), 근로자 훈련계좌제 시범실시(06. 하) 등
- 청년층의 취업정보 인프라 확충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청년층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국가인력수급전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
 - 청년구직자 DB를 활용하여 취업알선·훈련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노동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④ 재래시장 현대화 등 영세자영업자 보원대책 추진

-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및 시장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06. 상)
- 전국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 결과(05. 12월)를 토대로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06. 상)
- 생계형서비스 종사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특성별 종합컨설팅지원센터'로 개편

⑤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 비정규직 입법 완료시 하위법령 제·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원활한 법시행 여건 조성
-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06. 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06. 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관리체계를 마련

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교류 촉진 및 자금지원 확대
 -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대기업 확대(05년 26개→06년 35개) 및 Network loan 활용 확대 유도
- 주요 대기업·공기업에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주요 업종별로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성과 계약서 개발을 추진
- 유통업 분야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 유통업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사례 확산 유도

⑦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

- 계획수립·토지매수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격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후속작업 진행 및 추가 지정
- 쌀협상 국회비준의 후속조치로 국내의 농업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

* 06년 2월 중 국회에 쌀, 과수산업 위주로 보고하고, 06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4. 경제시스템 선진화·국제화

① 금융규제 개혁·인프라 확충 등 금융시스템 개혁 가속화

-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
 - －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투자자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등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을 상시 가동

- 금융기관의 자금증대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메자닌 파이낸싱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

* (현행) BBB이상 기업 → (확대) 연기금, 공기업, BB 이상 기업

- 금융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제도를 정비

- － 금융업권 및 생·손보간 업무구분 완화, 보험상품과 영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 － 폭발·붕괴 등 인위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보험을 도입

-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정보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신용정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취급업무 확대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 신탁중앙회의 자구노력 등 정상화방안을 마련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주의 의무제도 정착

* 5천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②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노력 가시화

-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 등 세제 합리화

- －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 강화 등 소득 파악 제고 방안을 추진

- － 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분석하여 연장여부 검토

*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일몰 규정 신설 추진

- － 공동사업과세제도 개선방안(06년중), 간접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정비 방안 마련(06. 상) 등 조세체계를 선진화

-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관세를 체계 조정 및 남북

간 관세특례제도의 도입

○ 재정선진화 및 국고관리의 효율화

-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 방안 검토 등 추진
 - 국유재산 임대체계 정비, 국유지 개발방식 다양화 등 국유지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활용도를 제고
 -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정부계약제도 개선
- * 현행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 →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국가통계위원회 위상·역할강화, 통계개발원 설치(통계청), 품질진단 확대 실시 등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지속 추진

○ 가격보조금 등 보조금 제도 합리화

- 보조금 지급방식을 일률적인 가격보조에서 수요자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 * 연탄보조금, 장애인 LPG 보조금, 보육료 지원 등
-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 유가보조금 지급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③ 선진적 노사관계의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조기 처리 추진

- * 주요내용 : 복수노동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직권중재제도 및 긴급조정제도 합리화, 부당해고 구제절차 다양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체계 정상화를 도모

④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

- 민간합동의 T/F를 구성하여 Post-로드맵의 정책을 제시
- 대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 검토

*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등

○ 민간의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 시장 자율규제시스템 정착

* 개인이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보완(안) 마련 등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 한·EFTA FTA는 06년 하반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ASEAN·캐나다와의 협상 마무리 및 주요국과의 협상 개시 여건 조성
- DDA 농업협상은 점진적 시장개방과 신축성 확보에 주력하되, 비농산물·서비스협상은 해외시장 확대 및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 對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EDCF의 아시아 지원비중 제고* 및 자원부국·신흥시장 중점 지원

* 아시아지역 EDCF 지원비중 : (01~05년) 58% → (06~09년) 70%

○ 중동지역의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BRICs와의 경험 인프라 구축과 진출기업 지원 강화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등 해외자원개발협력 확대

○ ASEAN+3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 협력을 증진하고, IMF 쿼타 증액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 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APEC 역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⑥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현을 본격화

- 금융허브추진기본법 제정, 금융허브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금융허브정책 추진
 -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 3월 출범)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지속적인 외환규제 완화, 기존의 외환자유화일정(2011년 목표) 단축 검토 등을 통해 외환시장 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개발 가속화
- 인천공항 2단계사업, 부산·광양항 건설 등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종합물류업 인증제(06년 시행) 정착,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

*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제정하여 물류관련 법제도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제고

⑦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지원 방안 모색 등 진일보한 남북경협정책 추진

5.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 수립(06. 상)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구체화·체계화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보육·교육비용 경감
 - * 차등보육료 확대 : (05년) 41만명/2,671억원 → (06년) 61만명/4,348억원
- 민간보육시설에게 아동수에 비례한 기본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보육료 상한규제 예외시설 도입을 위한 관련 조치 추진
-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이에 따른 대체인력확보 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다양화: (현재) 전일제 휴직→(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개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고령친화적 금융제도 마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

②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 전환(국민연금법 개정안)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년말) 이후의 국고지원 방식 개선 및 국민의료비 급증방지 방안 검토

- 고용보험의 적정 적립금 규모 설정과 보험요율의 합리적 조정체계 마련 및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추진

* 부과기준 : 임금총액 → 과세대상 소득, 부과방식 : 자진납 → 고지납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금 수급보장에 대한 불안과 운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우수 도입모델 발굴·확산 등

③ 친환경·자원절약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 '온실가스의 처리기술개발 계획' 수립, '국가온실가스 배출 통계시스템 구축' 등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응
-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05~07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자원 기술개발과 재활용 산업 지원 강화

* 자동차업체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06. 1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06. 9월) 등

④ 중장기 시계의 정책대응 및 미래위험 관리

- 중장기에 걸친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 공적연금 개혁, 세출구조조정 등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비인플레이션 방식의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
-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세제·세정 혁신을 일관성 있게 추진

* 06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 확정

- 미래의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 추진
- 중장기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포함하는 등 단기 대응중심의 현 위기관리시스템을 보완
-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 작업을 추진

* 06년중 관련부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T/F에서 작업 착수

- 규제개혁 등 투자여요인 해소,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

〈현 상황과 성과평가〉

-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높아지고 지표경기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개선
- 05년 4/4분기 이후에는 민간소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잠재수준의 성장 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그간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전망
- 다만,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체감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방위험도 있으므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대응
- 재정은 연간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상·하반기 간에는 고르게 집행
- * 06년중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지출은 주요사업비기준 52% 수준 집행(통합재정기준 50% 예상)
- 실물경기과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 강화

-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기반 확대노력 강화
-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06년 약7만명 확대), 취약계층의 자활확대(6→7만명), 기초생활보장 내실화(143→162만명) 등 저소득층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해외 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V. 10대 중점 추진과제

1.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기 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
- 재정조기집행, 추경편성 등 재정의 경기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를 견지
-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을 통해 고유가·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강화
-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병행 추진
- 신용불량자 대책,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소득세율 인하 등 가계부채 조정과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

-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 민자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등을 통해 민간건설투자의 부진소지를 보완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공제율 10→7%), R&D 세제 지원, 산업은행 설비투자 자금 공급확대(7.1→9.0조원), 규제개혁 등으로 설비투자 회복을 지원
- 금융·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

2.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 7월),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 6월)을 마련하여 창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 지원
 - 일괄의제처리 인허가 사항을 확대(48→74개)하고 민원처리협의회·사전심사청구제·일괄협의제 등을 도입
 - 보증·정책자금 지원에 시장원리 도입을 확산하고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 중소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위크아웃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05. 6월)
 - 채권은행협약 개정을 통하여 채권금액이 50억원 미만 이더라도 공동위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현 상황과 성과평가〉

- 그간 지속적인 창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창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비해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 소요
 - * 신설법인수 : (04. 1~10월) 4만개 → (05. 1~10월) 4.4만개
 - 창업배율(신설법인/부도법인) : (04. 1~10월) 18.0 → (05. 1~10월) 23.8
 - * 국가간 기업여건 평가(세계은행, 05. 9월)에서 우리나라는 창업부문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97위)

: 평균 12단계 절차에 22일 소요(OECD 평균 6단계 절차에 19일)

- 혁신 중소기업 지원확충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골격이 마련된 만큼 향후 일관된 정책집행이 필요
 - * 위크아웃으로 04. 7~05. 9월 중 2,500개 기업의 4.8조원 채무재조정
 - *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은 05년 제도설계를 마치고 06년부터 본격 시행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법인설립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창업을 촉진
 - ① 프랑스(04년), 일본(05년)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지된 최저자본금 제도(5,000만원) 폐지
 - ②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지점 관련 등기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③ 당사자가 직접서류를 작성하여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법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④ 회사설립 등기에 필요한 공증서류(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를 최대한 생략하는 방안 검토
-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등 지원(중소기업사업 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
 - 분할·합병, 영업양도·양수를 통한 사업전환시 채권자의제출기간 단축 등 관련 절차 간소화
 -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 부지를 처분하여 설비 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 거액·장기·우량기업의 보증이용 축소를 유도*하고 창업기업,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충

* 가산보증료 부과,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 시장 친화적 수단을 활용

-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하고 신용도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화를 확대
- 채권은행협의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참여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 제도 활성화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 내용〉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 도요타, John Deere 등은 협력업체의 기술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원가절감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시행

- 3차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05. 5. 16일, 7. 5일, 12. 22일)에서 상생협력방안 확정

* 성과공유제,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교류,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 등의 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현 상황과 성과평가〉

- 산업구조의 전환, 중국의 부상, 경기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

* 영업이익률(%): 대기업 (02년)7.5→(04년)9.4,

중소기업 (02년)5.3→(04년)4.1

부채비율(%): 대기업 (02년)128.9→(04년)91.9,

중소기업 (02년)152.1→(04년)138.7

- 3차례 상생협력회의 이후 주요 대기업 및 업종단체의 상생협력사업이 확대되는 등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

*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조성(대기업 출연), 중소협력업체에

전액 현금결제(LG전자 등), 성과공유제 채택(POSCO, 한전 등), 공동 부품 개발(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기계산업 상생협약 체결(05. 6월)

- 06년에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상생협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산업연구원 조사(05. 11. 25~12. 1일) : 납품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지원계획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05년 마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 대형 할인점, 홈 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유통분야의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 상생협력 정책과제의 확대 추진

○ 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 교류 촉진 및 자금지원 확대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확대
-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망중소기업에 투자 자금 지원

- Network loan을 통한 납품업체 지원확대

- 대기업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사례 확산 유도

○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에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고 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성과계약서 개발

-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간의 상생협의회 구축

○ 대·중소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유통·납품업체의 상생발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추진

4.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참여정부 출범이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
 - ‘서비스산업 세제·금융·인프라 개선방안’(04. 3월) 및 18개 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04년)
 - 05년 중 27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을 대부분 마련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도 상당부분 발굴·개선

〈현 상황과 성과평가〉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취약
 -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한국=100, 02년): 미국(217, 01년), 프랑스(190), 일본(183)
 - 이로 인해 여행·유학·의료 등 해외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그 규모도 확대
 - * 서비스수출의 성장기여도(%p): (04년)△0.4 → (05.상)△1.2
 - * 가계소비대비 1%의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될 경우 GDP 0.9%p 증가
-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사회서비스업(교육·의료·보육 등)은 공공성(재정투자방향)과 시장성(규제완화)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교육·의료 서비스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선택적 규제특례 방식을 적용
 - 다만, 의료분야는 부문별 자원의 공급 불균형 현상 등을 치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 * 병상수 국제비교: ①급성(인구 천명당): 한국 5.2 > OECD중

간값 3.1 ②장기요양: 한국 0.4 < OECD중간값 4.0

* 병원의 영세성: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이 전체 병원 수의 83.1%, 병상의 54.1% 차지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기 마련된 27대 서비스강화대책을 토대로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확정(06년초 대외경제위원회 개최)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확보 지원
 - *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등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률 선진화를 도모
 -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쿠폰제 경영컨설팅」제도 활성화
 - 우수한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디자인기술개발사업중 중장기 대형사업 확충
 - 외주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장을 육성하고 가상, 중간, 간접 방송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보석·귀금속 산업의 음성적인 유통구조를 양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한「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실시 및 1년 주기의 서비스업 통계제도 개선
 - * 총조사 결과는 향후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에 활용
 -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유통 등 주요 서비스산업별로 생산성 실태조사 실시 및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
- 국민의료비 부담의 급증을 방지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추진
 -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 전문병원 활성화,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검토
-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구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추진
-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 제외) 및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05~08년) 추진, 공공병원·보건소 조직정비 등 저소득층의 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공공의료시스템 정비 등 관련법 제·개정
-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추진
-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의료의 질 제고
-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통한 비용 절감방안 검토

5.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 고용창출 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등을 신규 고용창출원으로 발굴(일자리창출 정부종합대책, 04. 2월)

-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05. 4월)

* 고용서비스 선진화 성공모델의 조기정착·확산을 위한 6개 시범센터 운영

〈현 상황과 성과평가〉

-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시장의 필요에 의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개선의 여지가 큰 상황
- 사회적일자리의 경우, 정부지원은 확대*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원으로서의 기능은 미흡
- 대부분의 사회적일자리가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여 지원중단시 사라지는 단기 일자리의 성격

* (04년)840억원,30천명→(05년)1691억원,69천명→(06년)2908억원,134천명

-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으나 아직 본격적인 확산은 미흡

* 시범센터 운영기간(05. 1~10월)중 구인·구직자 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전체 센터)22.0%, (시범센터)97.7%

-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영세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

* 직업소개소 현황(개소) : (98년)1,902→(00년)3,378→(04년)6,498→(05. 6월)6,610

* 유료직업소개소 1개소당 연평균 매출은 57백만원에 불과(04년)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사회적 일자리) 정부지원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체 수익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형 모델'로 발전
- 사회적 기업의 운영주체를 기업·비영리단체 등으로 폭

넓게 허용하되,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까지, 영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부여로 한정

○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검토

-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취약계층 구매자에 대한 바우처 등 간접지원방식 도입

○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인증, 정부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을 제정(관련법 개정 포함)

□ (고용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산업을 육성

○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 센터장 공모, 자율운영권 확대 및 성과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센터를 성과중심형 혁신조직으로 개편

* 개별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 적합 훈련과정·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민간 고용서비스를 유망산업으로 육성

* 우수기관을 평가·인증하여 구인 구직자에게 합리적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

* 시장에 의한 가격형성이 가능하도록 직업소개 요금제도 개선

○ 취약계층 취업지원업무의 민간위탁 시범실시, 민-관 고용 정보망 연계 등 민관협력을 강화

6.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 개편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현행 자본시장관련 법령 체제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겸업화·대형화된 투자는행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칸

막이식 규율을 하고 있어 동일한 금융투자업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규율이 적용되고 있고 투자자 보호수준도 상이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열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음

〈현 상황과 성과평가〉

□ 경쟁력 있는 투자는행을 육성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최첨단 금융상품이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금융 빅뱅(Big bang)을 촉발시킬 필요

□ 03년부터 추진해 온 금융통합법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가 큰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우선 추진하기로 05년 결정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추진

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

- 선진 투자는행과 같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직접투자 등 다양한 영업모델(business model)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②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허용

-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증권·구조화 증권과 자연·사회현상 등 모든 위험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설계·취급 가능

-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카드, 지로 등), 송금, 수시 입출금(CD/ATM)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③ 동일한 금융투자업무는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없앴으로써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던 영역을 보완

④ 투자권유, 발행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시키고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도입하며 발행공시 적용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을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1/3이상을 철폐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

- 펀드 종류(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 등)별 운용자산 제한을 철폐하여 펀드가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

7. 중동·BRICs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마련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국무총리 중동 순방(05. 11. 21~12. 2일)을 계기로 중동 진출 확대와 경제·통상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

* 「중동진출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마련(05. 12월)

○ 원조물자 공여, EDCF 자금공여, 연수생 초청사업 실시 등을 통해 중동국가와의 우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브라질, 러시아, 인도 경제가 최근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면서 범정부차원의 「BRICs국가

와의 경험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05. 11월)

〈현 상황과 성과평가〉

□ 최근 5년간 고유가로 중동지역에 유입된 오일머니는 2조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

○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되면서 중동 지역에 유입되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BRICs는 세계 인구의 42.6%, 면적의 28.7%를 차지하는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

* 06년 성장전망(IMF, %): 중국 8.2, 인도 6.4, 러시아 5.3, 브라질 3.5

○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 과제〉

□ 對중동 플랜트 수주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석유·가스 탐사 개발 사업 등 에너지·자원개발 정책과 연계한 플랜트 수주에 대한 지원 강화

* 「중동 플랜트·건설 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 on-line을 통한 발주 정보 제공, 해외건설펀드 설립 등

○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한 소량·다품종 수요에 대응

□ 중동지역과의 정부·민간간 교류협력기반 확충

○ 중동지역 내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투자·에너지·IT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의체설을 확대

○ 「對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구성을 통해 투자유치·제3국 공동 진출 등 민간간 협력을 확대

□ BRICs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

- BRICs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취합·정리하여 제공하는 종합「Information Center」를 구축
- BRICs 국가·지역별 특성에 맞춰 각 국제대학원을 전문화하여 효율적인 지역전문가 양성을 유도
- 범정부차원의 「BRICs 협력지원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진출 전략을 협의하고 對BRICs진출기업 지원 강화

8.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동북아 금융허브 구현을 위해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03. 12월, 05. 6월)’ 하에 80개 세부추진과제 선정하여 추진
- 07년 금융허브 기반 구축, 10년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 완성, 15년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을 목표
-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물류체계 개선 종합대책(04. 3월)을 수립 점검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 추진
- *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 수립(03. 8월)

〈현 상황과 성과평가〉

-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되고 외국금융기관들의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증대
- 주식·외환·자산운용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푸르덴셜그룹의 아시아 지역본부 진출이 예정(06. 1월)
- * 외환시장 일일거래액(USD억) : (03)122 → (04)188 → (05.3/4월)226
- * 펀드 수탁고(조원) : (03)145.5 → (04)186.2 → (05. 11월)201.9
- 최근 중국 상해 양산항이 개장(05. 12월)되는 등 동북아

각국의 물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공항·항만 물류 인프라 조기 조성, 물류선진화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수요를 선점하고 해외 물류기업을 유치
- * 부산항(만TEU): (03)1,041→(04)1,149, 인천공항(만톤): (03)184→(04)213
- * 국제적 특송업체인 DHL, TNT를 비롯한 KWE, 스타인벡 등 유치
- 항만의 노무공급체계 개편(05. 12월) 및 부산·인천항 항만공사 설립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기반을 마련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구축
 -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금융허브추진위원회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활동 강화 등을 통해 외국금융기관 한국 진출을 촉진
 -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대학원 설립(06. 3월)을 차질없이 추진
 - KIC 설립과 퇴직연금제 시행, 외국인의 채권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과 채권시장의 국제화 촉진
 - 지속적인 외환규제 완화, 기존의 외환자유화일정(2011년 목표) 단축 검토 등을 통해 외환시장 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가속화하여 국제개방도시 및 항만으로 육성
 - 부산항 신항 개장(06. 1월), 송도 국제학교·병원 등 주요 사업을 착공하여 개발 본격화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등 행정지원체계 강화
-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 추진을 위해 항공, 도로, 철도, 해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 제정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 제 3자 물류를 활성화하고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조기 정착

9.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03년 10·29대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근본적 개혁 달성에는 미흡
- 부동산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 근절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 8·31 부동산 정책 마련
 -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선진화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구축
 -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환수
 -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택지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을 추진

〈현 상황과 성과평가〉

- 8·31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기 시작
 - 그동안 후속입법의 지연에 따른 시장의 관망세 지속 등으로 본격적인 가격하락 추세는 시현되고 있지 않으나
 - 후속입법의 완료와 공급확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으로 장기적인 시장안정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8·31 부동산정책에서 마련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우대 모기지론 등의 원활한 공급,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추진
 - 수도권에 900만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 신도시 분양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실천적 공급정책 추진
 - * 김포·양주지구: 06.3월말까지 예정지구를 확대 지정
 - 평택 평화도시, 송파거여지구: 06년 상반기 중 지정 추진
 - 판교 신도시: 06년 3월(25.7평 이하), 8월(25.7평 초과) 분양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제 구축,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
 - 실가등기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호가위주의 민간통계에서 벗어나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발표방안 강구
 -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07년 입법추진) 등 가격공시대상 확대 및 과세방법 개편*
 - * 현행 구분평가·구분과세를 통합평가·통합과세로 전환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주택·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 도시서민의 직주근접형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 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도심지내 임대주택 비축 활성화
 -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택지공급 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 유도
 - 우선변제 가능한 임대보증금 대상 확대 등 임대차 보호 강화

10.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

〈그간의 정책방향 및 추진내용〉

- 참여정부 들어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한편,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인하, 장기주식형저축 및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 약 1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축소
- 재정측면에서는 세출구조조정의 지속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재정운영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 강화

〈현 상황과 성과평가〉

-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세입감액추경 편성 등 세입여건은 04년 이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조세부담율은 19%대에서 안정적인 추세

* 조세부담률(%) : (02년)19.8, (03년)20.4, (04년)19.5,
(05년*)19.6

- 신용카드 활성화, 기장의무자 확대 등 세원투명성과 소득과약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과 과세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세부담이 근로자보다 크게 증가
· 자영업자부담(만원) : (98년)86→(04년)160, 근로자 : (98년)41
→(04년)70

* 자영업자 과세인원도 크게 증가
· 자영업자수(만명) : (98년)123→(04년)224, 근로자 : (98년)627→(04년)627

-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지출산·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공적연금 문제 등으로 재정지출소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재정 확보를 위하여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 ① R&D·서비스업 지원,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증가
- ② 부동산 투기·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지속 추진

— 자영업자 소득과약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들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과세인프라 구축

* 현금거래분에 대한 소득과약 방안과 장부기장유도 등 근거과세 확대방안을 모색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수임건별 수임액이 기재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수집을 확대

*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간 소득신고 자료 정보공유 체계 강화

- ③ 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연장여부 검토

—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일몰 규정 신설 추진

-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주어진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 세출구조조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형 공공투자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 연금·복지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서 지출구조개혁 추진

〈미래 위험관리 등 중장기시계의 정책대응〉

※ 상기 10대 중점과제의 추진과 함께 미래 위험관리 등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응 착수

□ 미래준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 작업을 추진

- 중장기 인구수급, 주택수급,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 거시 경제전망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전망간의 일관성 유지

* 06년중 관련부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T/F 구성, 작업 착수

□ 중장기에 걸친 재정전망 및 재정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세입 및 지출 전망 작업 추진
-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
- 공적 연금개혁·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 방안 등을 06년중 마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재정지출 소요에 대비

□ 미래의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 추진

- 중장기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현재 단기적인 위기 예측 및 대응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위기관리시스템(EWS)을 보완
- 각종 위원회와 부처에서 수립·운영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종합 점검하여 정책간 정합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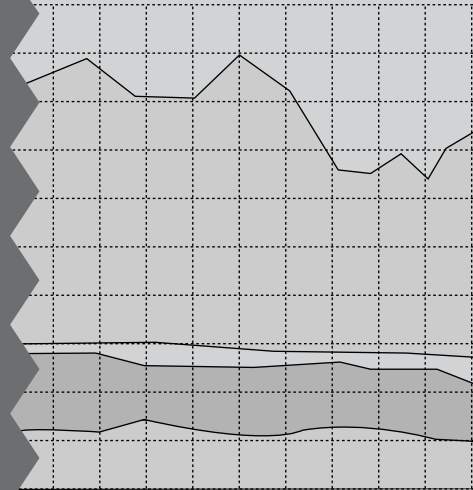
재정통계

• 지방세 II편

• 지방재정 I 편

1. 취득세 (징수실적)
2. 농지세(징수실적)
3. 농업소득세(징수실적)
4. 자동차세 및 동부가세(징수실적)
5. 도축세(징수실적)
6. 도시계획세(징수실적)

• 지방재정 II편



1. 취득세 (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 도	부 과 액	징 수 액	불납결손액	미 수 액	징 수 율
1966	2,732,716	2,550,839	—	—	93.3
1967	3,889,500	3,705,597	—	—	95.2
1968	5,522,237	5,183,913	—	—	93.8
1969	7,822,230	7,210,909	—	—	92.1
1970	12,044,977	11,056,747	5,329	982,902	91.7
1971	13,718,108	12,723,719	5,646	988,743	92.8
1972	12,953,687	11,782,615	14,183	1,156,889	90.9
1973	21,285,919	19,866,903	16,849	1,402,167	93.3
1974	32,583,665	30,451,349	7,532	2,124,780	93.4
1975	44,688,358	41,820,047	7,137	2,861,174	93.5
1976	61,989,266	58,399,128	42,973	3,547,165	92.6
1977	79,075,701	75,462,833	16,280	3,596,588	95.4
1978	120,336,211	114,554,884	14,000	5,767,327	96.0
1979	140,207,708	135,036,868	20,098	5,150,742	96.3
1980	179,491,339	162,951,659	27,774	16,511,906	90.8
1981	189,019,047	179,768,902	110,925	9,139,220	95.1
1982	224,591,792	215,508,078	81,680	9,002,034	96.0
1983	321,600,461	307,767,471	54,519	13,778,471	95.7
1984	352,605,605	337,526,079	55,730	15,023,796	95.7
1985	371,906,618	356,321,794	82,913	15,501,911	95.8
1986	392,563,939	371,184,705	38,979	21,340,255	94.6
1987	471,615,410	452,652,110	190,665	18,772,635	96.0
1988	682,609,529	661,494,476	238,504	20,876,549	96.9
1989	814,230,252	787,215,449	31,678	26,983,125	96.7
1990	1,203,145,983	1,164,926,685	333,626	37,885,672	96.8
1991	1,598,721,293	1,525,728,689	67,605	72,924,999	95.4
1992	1,835,920,941	1,732,592,469	1,575,198	101,753,274	94.4
1993	2,155,084,597	2,042,961,731	816,957	111,305,909	94.8
1994	2,489,661,606	2,344,644,232	650,315	144,367,059	94.2
1995	2,887,708,640	2,691,021,647	893,864	195,793,129	93.2
1996	3,235,987,061	3,041,240,598	5,640,534	189,105,929	94.0
1997	3,589,916,521	3,319,483,688	2,584,214	267,848,619	92.5
1998	2,769,184,363	2,479,829,135	4,228,635	285,126,593	89.6
1999	3,249,652,617	3,065,410,709	4,320,551	179,921,357	94.3
2000	3,381,191,544	3,148,197,277	6,073,616	226,920,651	93.1
2001	3,945,566,203	3,782,506,193	3,734,867	159,325,143	95.9
2002	5,476,181,726	5,278,222,516	2,970,001	194,985,909	96.4
2003	5,695,281,558	5,502,868,163	2,748,487	189,664,908	96.6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농지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5,007,426	4,962,986	—	—	99.1
1967	3,383,781	3,350,208	—	—	99.0
1968	3,492,754	3,449,848	—	—	98.8
1969	4,837,367	4,780,465	—	—	98.8
1970	3,172,920	3,122,581	291	50,048	98.4
1971	4,569,744	4,522,039	754	46,951	99.0
1972	5,398,010	5,336,307	1,038	60,665	98.9
1973	8,155,912	8,086,684	854	68,374	99.2
1974	13,979,682	13,866,309	869	112,504	99.2
1975	21,024,859	20,840,899	1,083	182,877	99.1
1976	31,785,422	31,636,878	103	148,441	99.5
1977	36,095,946	35,945,398	256	150,292	99.6
1978	44,529,331	44,317,512	2,204	209,615	99.5
1979	53,911,509	53,644,024	3,090	264,395	99.5
1980	63,140,610	62,573,402	7,312	559,896	99.1
1981	78,548,324	78,039,313	3,914	505,097	99.4
1982	83,360,409	83,027,893	1,281	331,235	99.6
1983	91,014,469	90,591,843	1,888	420,738	99.5
1984	93,133,265	92,547,119	5,679	580,467	99.4
1985	14,387,276	14,215,088	477	171,711	98.8
1986	14,991,276	14,758,011	14,081	219,184	98.4
1987	16,857,545	16,661,233	1,228	195,084	98.8
1988	18,971,649	18,713,540	553	257,556	98.6
1989	7,481,528	7,268,021	36	213,471	97.1
1990	6,175,025	5,988,519	20	186,486	97.0
1991	6,002,641	5,832,252	339	170,050	97.2
1992	3,222,644	2,986,892	—	235,752	92.7
1993	2,317,098	2,248,633	—	68,465	97.0
1994	2,455,929	2,303,323	408	152,198	93.8
1995	2,151,905	2,066,209	78	85,618	96.0
1996	3,946,006	2,639,432	—	1,306,574	66.9
1997	2,856,137	2,797,314	53	58,770	97.9
1998	2,945,446	2,679,326	476	265,644	91.0
1999	4,538,788	4,343,434	27	195,327	95.7
2000	3,660,202	3,190,521	203	169,478	95.0

주: 2001년부터 폐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3. 농업소득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001	1,394,487	1,304,764	445	89,278	93.6
2002	2,775,011	2,708,439	24	66,458	97.6
2003	3,728,254	3,668,594	—	59,660	98.4

주: 2001년부터 신설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4. 자동차세 및 동부가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1,101,364	1,080,551	—	—	98.1
1967	1,577,670	1,555,018	—	—	98.6
1968	2,541,015	2,487,508	—	—	97.9
1969	3,977,054	3,869,259	—	—	97.3
1970	5,836,702	5,604,762	1,027	230,913	96.0
1971	6,683,623	6,392,587	3,275	287,761	95.6
1972	7,191,846	6,879,604	6,269	305,973	95.7
1973	8,246,012	7,866,028	4,868	375,116	95.4
1974	12,926,678	12,015,901	6,394	904,383	93.0
1975	13,111,075	12,353,486	5,151	752,438	94.2
1976	14,868,551	14,136,608	5,625	726,318	95.1
1977	19,681,586	18,794,823	2,051	884,712	95.5
1978	26,847,009	25,505,007	16,478	1,325,524	95.0
1979	51,695,657	48,438,716	31,648	3,225,293	93.7
1980	61,705,068	56,941,875	87,238	4,675,955	92.3
1981	64,126,941	61,012,593	166,149	2,948,199	95.1
1982	71,927,392	67,980,513	103,556	3,843,323	94.5
1983	88,846,791	83,804,529	100,124	4,942,138	94.3
1984	110,390,853	103,668,706	126,275	6,595,872	93.9
1985	126,351,391	118,304,698	81,456	7,965,237	93.6
1986	150,150,125	139,133,068	72,621	10,944,436	92.7
1987	182,940,922	167,719,282	68,485	15,153,155	91.7
1988	236,512,750	218,055,046	113,883	18,343,821	92.2
1989	329,207,548	304,680,677	107,754	24,419,117	92.5
1990	463,224,723	425,934,259	253,617	37,036,847	91.9
1991	688,540,985	634,953,186	285,957	53,301,842	92.2
1992	884,564,081	826,234,509	111,955	58,217,617	93.4
1993	1,092,673,409	1,027,124,984	233,042	65,315,383	94.0
1994	1,385,488,301	1,293,785,738	86,816	91,615,747	93.4
1995	1,690,295,073	1,545,231,914	156,930	144,906,229	91.4
1996	1,988,110,192	1,818,439,902	159,133	169,511,157	91.5
1997	2,280,515,542	2,054,012,317	299,084	226,204,141	90.1
1998	2,459,105,586	2,174,871,379	479,604	283,754,603	88.4
1999	2,183,304,425	1,936,391,986	854,393	246,058,046	88.7
2000	2,258,608,855	2,007,008,077	1,733,015	249,867,763	88.9
2001	2,094,713,435	1,889,419,957	2,556,585	202,736,893	90.2
2002	1,958,000,279	1,750,720,020	2,349,223	204,931,036	89.4
2003	2,022,637,290	1,778,302,609	7,047,398	237,287,283	87.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5. 도축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190,920	190,691	—	—	99.9
1967	178,462	178,431	—	—	100.0
1968	166,061	166,039	—	—	100.0
1969	199,060	199,047	—	—	100.0
1970	235,885	235,842	—	43	100.0
1971	214,897	214,876	—	21	100.0
1972	227,271	227,266	—	6	100.0
1973	225,361	225,198	1	162	99.9
1974	305,284	305,282	—	2	100.0
1975	548,050	546,142	—	1,908	99.7
1976	1,093,811	1,093,432	—	379	100.0
1977	1,375,444	1,375,434	—	10	100.0
1978	1,453,752	1,453,704	—	48	100.0
1979	3,847,158	3,844,384	—	2,774	99.9
1980	4,684,425	4,680,463	—	3,962	99.9
1981	6,328,806	6,199,928	—	128,878	98.0
1982	7,817,660	7,813,953	—	3,707	100.0
1983	10,629,013	10,628,925	—	88	100.0
1984	12,712,686	12,712,567	—	119	100.0
1985	15,546,181	15,538,107	—	8,074	99.9
1986	18,600,542	18,590,189	—	10,353	99.9
1987	19,359,972	19,303,668	—	56,304	99.7
1988	17,825,053	17,821,988	—	3,065	100.0
1989	17,388,530	17,348,290	—	40,240	99.8
1990	17,778,571	17,778,181	—	390	100.0
1991	21,812,673	21,764,203	—	48,470	99.8
1992	22,537,472	22,528,846	—	8,626	100.0
1993	26,266,420	26,266,384	—	36	100.0
1994	30,004,349	29,878,406	—	125,943	99.6
1995	33,956,112	33,911,426	—	44,686	99.9
1996	38,643,397	37,885,553	—	757,844	98.0
1997	48,177,851	47,203,683	—	974,168	98.0
1998	48,968,894	48,193,947	—	774,947	98.4
1999	45,685,735	45,591,654	—	94,081	99.8
2000	51,889,882	51,241,527	—	757,355	98.5
2001	45,162,534	44,953,307	—	209,227	99.5
2002	49,537,515	48,523,757	—	1,013,758	98.0
2003	44,969,648	44,704,158	129,580	765,910	98.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6. 도시계획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

연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1966	68,545	64,974	—	—	94.8
1967	219,868	213,952	—	—	97.3
1968	1,162,739	1,132,375	—	—	97.4
1969	1,553,137	1,467,477	—	—	94.5
1970	2,329,455	2,206,294	697	122,464	94.7
1971	2,941,236	2,781,217	969	159,050	94.6
1972	5,841,072	5,490,877	4,336	345,859	94.0
1973	6,835,017	6,476,076	6,560	352,381	94.7
1974	8,716,489	8,321,759	2,914	391,816	95.5
1975	14,010,556	13,404,078	1,995	604,483	95.7
1976	18,185,516	17,522,398	950	662,168	96.4
1977	18,958,413	18,370,067	1,881	586,465	96.9
1978	20,649,353	20,064,960	7,197	577,196	97.2
1979	35,088,553	34,220,600	4,220	863,733	97.5
1980	52,464,470	50,965,292	13,474	1,485,704	97.1
1981	68,277,314	66,609,343	14,063	1,653,908	97.6
1982	82,615,820	80,628,450	15,307	1,972,063	97.6
1983	94,699,993	92,187,819	4,736	2,507,438	97.3
1984	102,863,087	100,443,491	4,589	2,415,007	97.6
1985	117,100,289	114,462,582	11,564	2,626,143	97.7
1986	126,631,503	123,863,460	26,504	2,741,539	97.8
1987	138,208,661	134,423,511	7,322	3,777,828	97.3
1988	152,408,654	149,081,710	43,974	3,282,970	97.8
1989	185,065,846	181,382,102	11,841	3,671,903	98.0
1990	250,003,716	243,623,924	16,928	6,362,864	97.4
1991	314,412,635	307,319,308	6,084	7,087,243	97.7
1992	403,265,211	394,490,513	20,372	8,754,326	97.8
1993	484,286,708	473,296,721	56,825	10,933,162	97.7
1994	582,727,399	563,953,182	24,495	18,749,722	96.8
1995	676,870,095	652,729,391	74,898	24,065,806	96.4
1996	717,931,035	697,151,775	134,381	20,644,879	97.1
1997	756,653,950	731,470,960	71,305	25,111,685	96.7
1998	798,266,412	752,324,686	125,104	45,816,622	94.2
1999	828,119,699	785,013,238	260,580	42,845,881	94.8
2000	852,717,717	815,419,979	465,925	36,831,813	95.6
2001	881,382,247	851,003,880	506,514	29,871,583	96.6
2002	922,616,242	893,751,448	337,876	28,526,918	96.9
2003	1,036,104,693	998,481,964	387,119	37,235,610	96.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양극화, 정치선전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정부와 여당은 새해에 양극화(兩極化)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릴 것임을 예고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를 회복할 전망이지만 양극화 현상으로 서민의 체감경기(體感景氣)는 계속 나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말하면서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것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경기회복 강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일요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아 가진 당·정·청 워크숍에서 “앞으로 남은 큰 일은 양극화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 소

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뒤 3년 내리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으로 중산층 해체와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 여파로 결혼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모은 돈이 없는 노인 등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소외층이 늘고 있다. 전기가 끊어진 집에서 촛불로 버티던 어린이가 화재로 숨지는 참극까지 있었다. 국민층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시급한 국가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양극화의 원인이 상위 2%의 부유층 때문인 듯이 몰아가고, 이들에게는 중과세(重課稅)하는 것이 정의(正義)라고 주장하는 ‘로빈후드 식’ 발상은 정치적 선동으로서 효과적일지 몰라도 양극화 해소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여권(與圈) 워크숍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업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서민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부의 쏠림현상은

참여정부가 나눠주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세목(稅目) 신설, 누진제 강화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자 2%를 대상으로 ‘조정밀 세금폭탄’을 때린다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대책도 이런 발상에서 나왔다. 글로벌경제 시대에는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 가는 국가, 기업, 개인이 당연히 더 많은 부(富)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가 창출한 이익은 국내의 빈곤층을 착취한 결과가 아니다.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이겨 세계의 소비자들에게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런 기업과 부자에 대해 죄를 벌하듯이 무거운 납세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과는 정반대인 ‘투자 방해하기’다. 외자 유치논쟁 내국기업마저 해외로 내쫓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일자리를 줄

이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빈곤층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켜 궁핍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자를 끌어내리는 방식의 격차 해소는 하향 평등화를 낳을 뿐이다.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면서 분배를 강조하는 정치적 행태와 이에 맞추는 정책은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 심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 역사적 경험이 잘 보여준다. 이 정부에서도 3년 동안에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노 정부는 경기를 제때 부양하지 못한 것을 “인위적 부양은 안 한다”는 말로 변명해 왔지만,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빈곤층으로 주저앉는 결과를 빚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再起)의 기회를 주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세금을 무한정 올려서는 경제 전반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 세금이 많은 곳에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적은 세금으로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과거의 고용 거품을 지탱해 온 국가 주도 경제개발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 정

치적 분배논리로 내년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계속 빠져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투자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한 부총리가 주장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업자를 양산하는 공급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급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2005년 12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국민연금 확대보다 시급한 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역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지역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납부 유예’ 상태고, 납부자도 4명 중 한명꼴로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그 부담을 국가가 떠맡아

야 한다. 따라서 5인 이하 영세사업주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의 직장 가입자로의 전환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재정 안정화대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외면으로 2년 넘게 국회에서 낱잠을 자고 있다. 오는 2047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음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때 국민연금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는 듯하더니 이젠 포기하고 보따리를 쌀 태세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후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이대로 좌초하게 해선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파탄은 곧바로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된다. 정치권이 진정 ‘촛불’을 밝혀가며 국민을 설득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국민연금이 굳게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2005년 12월 28일자 서울신문 사설

새해 경제, 막힌 곳 뚫는 實에 달렸다

정부가 어제 확정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과 새 일자리 37만개 창출'이 핵심이다. 우선 경기회복 기반을 다지고 중단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동반성장, 시스템 선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한다. 투자활성화를 꾀한다니 우선 다행이다. 그러나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가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업은행이 조사한 제조업체들의 계획은 0.1%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투자는 감소할 전망이다.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중소기업 창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사업전환 간소화 등이 더 빨리, 더 폭넓게 시행돼야 한다. 교육 의료 레저의 국내 소비를 늘리려면 경쟁유도가 필요하다. 서비스업 지원은 소규모 업체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에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 국내외 기업이 원하는 규제 해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결과제다.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밀돌았으니 내년 5% 성장은 고용 확충에 미흡하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복지 개념의 접근도 한계가 뻥하다. 공공부문 혁신, 세제 및 재정 선진화 등도 '말로만 개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연금제도 개편도 계속 미룰 일이 아니며 소득세 납세자 비율 확대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선진화하겠다는 경제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자유시장경제여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금융허브니 뭐니 추진해야 모래 위에 성(城) 쌓기다. 올해처럼 정치형 '기업 괴롭히기'가 반복돼서도 희망이 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 없이는 열매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정치논리, 정권논리를 앞세우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다. 선거까지 있는 해에는 특히 경제의 정치 중립적 운용이 절실하다. 재정의 엄격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2005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 사설

중부세법 처리로 한 고비는 넘겼지만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

까지 참여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었으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해를 넘겼을 경우 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감안하면 어쩔수 없었다고 본다. 중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공시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새 법은, 부자를 압박하고 편가르기를 위함이 아니다. 10억원대 집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도 0.2~0.3%에 그쳐, 1% 안팎인 선진국에 견주어 턱없이 낮다. 이를 정상화하면서 투기비용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탄핵을 건다면 무책임할 뿐더러, 서민층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일 터이다. 보유세를 더 내게 된 계층도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고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합당한 비용으로 수용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나아가 세금도 늘어난 참에 부동산 투기로 힘 안 들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더붙어 사는 이들이 지향해야 할 바다. 정부도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8·31 대책 후속입법 마무리로 부동산값이 잡힐 것으로 낙관하고 손을 놔서는 안 된다. 뒤뜰린 부동산 관련 제도

를 바로잡긴 했지만, 그게 곧 집값과 땅값 하향 안정세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는 각종 개발 수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와 투기심리, 넘치는 시중의 부동산자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이고 세밀한 대책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땅값 안정 없이는 집값도 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하니, 지켜 볼 일이다. 이젠 서민들이 집값 걱정 않고 생업에 충실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2005년 12월 31일자 한겨레 사설

고소득 전문직과 근로자, 세금 불균형 줄여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 행정이 강화되고 투명화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과 근로소득자 간의 조세형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모든 납세자는 소득과 재산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는 “전문사업자별로 수입금액 명세서와 제출자료 내용

을 세분하고, 성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수입건수와 수입액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해 변호사법 시행령도 고치겠다고 한다. 수입을 장부에 적지 않는 무기장(無記帳)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무겁게 물릴 계획이다. 이주성 국세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와 자료상 근절이 ‘국세청의 40년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행정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자영업자 4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를 1, 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월급봉투를 그대로 보여주고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을 줄여 신고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전체의 52% 수준이라고 한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여명 가운데 17%가 월평균 소득을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무직 근로자의 세부담은 자영업자의 3배 수준이지만 자영업자의 주택소유비율은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고 소비지출도 많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소득구간별로 최고 29.9%까지 오르게 된다. 근로자 임금상승률 전망치 7.2%의 4배 수준이다. 요즘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등 각종 공제자료를 모으고 있는 근로자들로서는 조세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겹내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를 외면하지만, 전문직 탈세 방지와 근로세 누진부담 완화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2006년 1월 3일자 동아일보 사설

2006년 1월호 통권 제115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 행 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월간 재정포럼 / 2006년 1월 16일 발행 / 제11권 제1호(통권 제11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